

2025회계연도 결산 검 토 보 고 서

산 립 청 소 관

2026. 8.

농 립 축 산 식 품 해 양 수 산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현 중

목 차

I .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1
1. 2025년도 결산 총괄	1
2. 세입·세출 개요	3
가. 세 입	3
나. 세 출	4
3. 예비비 지출	5
4. 재무회계	5
가. 재정상태	5
나. 재정운영	6
다. 순자산변동	7
II . 회계별 검토의견	8
1. 일반회계	8
가. 개 요	8
1) 세입결산	8
2) 세출결산	10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3
1) 산림공간정보기반조성 :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구축) 감리계획 수립 및 감리용역 추진 부실	13

2) 목재생산관리	24
(1) (친환경 목재생산) 친환경벌채 지원 제도 운영 미흡 및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26
(2) (친환경 목재생산) 수요예측에 근거한 적정한 예산규모를 재산정 할 필요	32
3) 농림위성융합 지능형 산림특화정보기반연구(R&D) : 연구개발사업의 과제 종료 시점에 임박한 연구장비 구입 지연	35
4) 한국임업진흥원 지원 : (신청사 설립) 보조금 집행대책 마련 및 향 후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44
5) 산림휴양등산증진 : (공립밀양산림레포츠센터 조성) 보조금 교부지침 위반 및 전액 환수에 대한 철저한 정산관리 필요	52
6) 산림교육치유활성화 : (치유의 숲 조성) 건설보상비 과다편성 주의 및 구체적 실소요 예산 검토 선행 필요	59
7) 산불방지대책	68
(1) (고정익항공기 물탱크 도입) 추경 사업의 사전검토 미흡으로 인한 예산 편성과 전액 불용 반복	70
(2) (고성능 산불방지드론) 도입 가능성 검토 미흡에 따른 추경 사업 추진 무산 및 추경예산의 목적 외 사용 부적절	75
8) 산림헬기 도입·운영 : (산림헬기 도입·교체) 연내 집행가능성 및 계약 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인 연부율 설정	85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92

가. 개 요 92

1) 세입결산	92
2) 세출결산	94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96
1)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 (이행점검 및 사업관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 연례적 전액 불용 및 제도개선 미비	96
2) 임업기능인양성 : 임업전문인력 교육훈련 추진 실적 제고 및 성과 관리 체계 개선 필요	103
 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09
가. 개 요	109
1) 세입결산	109
2) 세출결산	109
 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10
가. 개 요	110
1) 세입결산	110
2) 세출결산	111
 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13
가. 개 요	113
1) 세입결산	113
2) 세출결산	115

[산림청 소관]

I.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1. 2025년도 결산 총괄

□ 2025년도 산림청 소관 일반회계 등 5개 회계의 총계 기준 세입 예산액은 1조 2,641억 6,400만원이며, 1조 3,950억 1,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조 2,772억 2,800만원을 수납하고 불납결손액 4억 3,600만원과 미수납액 1,173억 4,900만원이 각각 발생하였으며,

총수입 기준 세입예산액은 4,274억 6,300만원이며, 5,511억 7,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4,333억 9,300만원을 수납하고 불납결손액 4억 3,600만원과 미수납액 1,173억 4,900만원이 각각 발생하였음.

【 2025년도 세입 결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대비 수납증감 (B-A)
	본예산	추경(A)					
예 산	1,146,020	1,264,164	1,395,013	1,277,228	436	117,349	13,064
기 금	-	-	-	-	-	-	-
총 계	1,146,020	1,264,164	1,395,013	1,277,228	436	117,349	13,064
총수입	427,463	427,463	551,178	433,393	436	117,349	5,930

※ 주: 총수입 = 수입총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내부거래수입 - 보전수입

※ 자료: 산림청

□ 2025년도 산림청 소관 일반회계 등 5개 회계의 총계 기준 세출 예산액은 3조 6,329억 2,6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등에 따른 예산현액은 4조 3,933억 4,100만원이며, 이 중 4조 1,206억 5,700만원을 집행하고 1,507억 2,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19억 6,100만원을 불용하였고,

총지출 기준 세출예산액은 2조 6,169억 3,0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 및 추경 등에 따른 예산현액은 3조 1,583억 7,600만원이며, 이 중 2조 9,145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1,507억 2,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30억 6,1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5년도 세출 결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출 예산액	예산 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추경	예비비	이·전용				
예산	3,632,926	74,424	685,990	-	124,121 △124,121	4,393,341	4,120,657	150,723	121,961
기금	-	-	-	-	-	-	-	-	-
총계	3,632,926	74,424	685,990	-	124,121 △124,121	4,393,341	4,120,657	150,723	121,961
총지출	2,616,930	74,424	467,021	-	124,121 △124,121	3,158,376	2,914,590	150,723	93,061

※ 주: 총지출 = 지출총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내부거래지출 - 보전지출

※ 자료: 산림청

2. 세입·세출 개요

가. 세 입

□ 2025회계년도 산림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1조 2,641억 6,400만원이며, 1조 3,950억 1,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조 2,772억 2,800만원을 수납(91.6%)하고 불납결손액 4억 3,600만원과 미수납액 1,173억 4,900만원이 각각 발생하였음.

【 2025년도 세입 결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회 계 명	예산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감 (C-A)
	본예산	추경(A)					
일반회계	98,504	98,504	185,436	154,018	436	30,982	55,51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975,596	1,093,740	1,116,863	1,037,906	-	78,957	△55,83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	3,219	1,973	-	1,246	1,97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16,555	12,936	-	3,619	12,936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71,920	71,920	72,940	70,395	-	2,545	△1,525
합 계	1,146,020	1,264,164	1,395,013	1,277,228	436	117,349	13,064

※ 자료: 산림청

□ 수납액은 전년(1조 1,179억 3,600만원) 대비 1,592억 9,200만원 (14.3%)이 증가하였으며, 시효완성 등으로 4억 3,600만원을 불납결손 처리 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173억 4,9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주요 발생사유는 납기미도래, 체납자 재력 부족 등임.

나. 세 출

- 2025회계년도 산림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3조 6,329억 2,6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등에 따른 예산현액은 4조 3,933억 4,100만원이며, 이 중 4조 1,206억 5,700만원을 집행하고 1,507억 2,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19억 6,1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5년도 세출 결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회계명	예산액	예산 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전 년 이월	추경	예비비	이·전용				
일반회계	2,188,082	20,196	467,021	-	122,172 △122,172	2,675,299	2,559,591	88,143	27,564
농특회계	975,596	46,692	118,144	-	1,949 △1,949	1,140,432	1,035,295	25,618	79,520
지특회계	397,328	1,076	100,825	-	-	499,229	456,816	30,387	12,026
책특회계	71,920	6,461	-	-	-	78,381	68,594	6,576	2,851
총계	3,632,926	74,424	685,990	-	124,121 △124,121	4,393,341	4,120,657	150,723	121,961
총지출	2,616,930	74,424	467,021	-	124,121 △124,121	3,158,376	2,914,590	150,723	93,061
내부거래	1,015,996	-	218,969	-	-	1,234,965	1,206,066	-	28,900

※ 주: 총지출 = 총계-내부거래(회계간·회계기금간·회계내계정간 거래)-여유자금

※ 자료: 산림청

- 참고로, 이·전용액은 재해복구비 부족액 등으로 기정예산에서 충당하였음.

3.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4. 재무회계

가. 재정상태

【 2025회계연도 산림청 재정상태표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2024년	증 감	
			금 액	비 율
자 산	32,082,484	31,675,398	407,086	1.3
부 채	61,279	57,278	4,001	7.0
순자산	32,021,205	31,618,120	403,085	1.3

※ 자료: 산림청

□ 2025년 말 현재 산림청 소관 자산 총계는 32조 824억 8,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70억 8,600만원(1.3%) 증가하였으며,

자산의 주요 증가내역은 토지 취득, 입목의 증가 등에 따른 일반 유형자산 4,566억 100만원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2025년 말 부채는 612억 7,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억 100만원(7.0%) 증가하였으며,

부채의 주요 증가내역은 전년 대비 차입부채 69억 7,600만원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025년 말 현재 32조 212억 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30억 8,500만원(1.3%) 증가하였음.

나. 재정운영

【 2025회계연도 산림청 재정운영표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2024년	증 감	
			금 액	비 율
I. 프로그램순원가	2,336,520	2,082,461	254,059	12.2
II. 관리운영비	227,703	221,022	6,681	3.0
III. 비배분비용	52,300	47,086	5,214	11.1
IV. 비배분수익	242,809	231,975	10,834	4.7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2,373,714	2,118,595	255,119	12.0
VI. 비교환수익 등	55	150	△95	△63.3
VII. 재정운영결과(V - VI)	2,373,659	2,118,445	255,214	12.0

※ 자료: 산림청

□ 2025년 재정운영결과는 2조 3,736억 5,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52억 1,400만원 증가(12.0%) 하였음.

□ 주요 증가내역은 프로그램 총원가 증가 등으로 프로그램순원가가 전년 대비 2,540억 5,900만원 증가, 자산처분이익 등으로 비배분 수익 108억 3,400만원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다. 순자산변동

【 2025회계연도 산림청 순자산변동표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I.기초순자산	12,911,856	△ 2,500,020	21,206,284	31,618,120
II.재정운영결과	-	2,343,403	-	2,343,403
III.재원의조달및이전	-	2,721,557	-	2,721,557
IV.조정항목	-	-	295,052	295,052
V.기말순자산 (I - II + III + IV)	12,911,856	△ 2,121,866	21,501,336	32,291,326

※ 자료: 산림청

□ 기초순자산은 2025년 발생한 순자산변동으로 전년 대비 3,400억 200만원 증가한 31조 6,181억 2,000만원이고, 재정운영결과는 전년 대비 2,249억 5,800만원 감소한 2조 3,434억 300만원임.

□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증가에 따른 재원의조달 증가, 무상이전지출 증가에 따른 재원의 이전 증가로 전년 대비 2,916억 2,000만원 증가한 2조 7,215억 5,700만원임.

□ 기초순자산에서 재정운영결과를 차감하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과 조정항목을 더한 기말순자산은 32조 2,913억 2,600만원임.

II. 회계별 검토의견

1. 일반회계

가. 개 요

1) 세입결산

- ☐ 2025년도 일반회계는 관유물매각대 583억 800만원, 경상이전 수입 202억 6,300만원, 재산수입 157억 1,800만원 등 985억 4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실제 징수결정액은 경상이전수입 및 관유물매각대 증가 등으로 869억 3,200만원이 증가한 1,854억 3,600만원임.
- ☐ 징수결정액 1,854억 3,600만원 중 토지매각대 등 관유물매각대 986억 9,000만원,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반납금 등 경상이전수입 329억 8,300만원, 토지대여료 등 재산수입 188억 7,400만원 등으로 총 1,540억 1,800만원을 수납하였음.
- ☐ 불납결손액 4억 3,600만원은 소멸시효 완성 등에 따라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 309억 8,200만원의 주요 원인은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이 127억 3,200만원, 납기미도래가 60억 4,400만원, 관계기관 예산부족이 82억 5,300만원 등임.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과 목	예산액 (A)	정 수 결정액 (B)	수납액 (C)	불 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증 감	
						E=C-A	E/A
합 계	98,504	185,436	154,018	436	30,982	55,514	56.4
○ 재산수입	15,718	20,833	18,874	27	1,932	3,156	20.1
- 관유물 대여료	14,843	17,402	16,138	27	1,237	1,295	8.7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875	3,431	2,736	-	695	1,861	212.7
○ 경상이전수입	20,263	54,964	32,983	352	21,629	12,720	62.8
-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61	183	54	4	125	△7	△11.5
- 변상금 및 위약금	2,765	15,547	4,288	296	10,963	1,523	55.1
- 가산금	5	5	1	-	4	△4	△80.0
- 기타경상이전수입	17,432	39,228	28,640	52	10,536	11,208	64.3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4,215	3,709	3,471	2	236	△744	△17.7
- 입장료수입	184	181	172	-	9	△12	△6.5
- 면허료 및 수수료	129	129	127	-	2	△2	△1.6
- 잡수입	3,902	3,399	3,172	2	225	△730	△18.7
○ 관유물매각대	58,308	105,930	98,690	54	7,185	40,382	69.3
- 고정자산매각대	160	34	34	-	-	△126	△78.8
- 토지 및 무형자산매각대	58,148	105,896	98,656	54	7,185	40,508	69.7

※ 자료: 산림청

2) 세출결산

-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당초 2조 1,880억 8,200만원이었으나 추경증액분 4,670억 2,100만원, 전년도 이월액 201억 9,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2조 6,752억 9,900만원으로 증가함.
- 예산현액 중 산림재해대응, 산불예방 및 대응 등 산림재난관리에 9,252억 9,200만원, 국유재산 관리 등 산림자원 및 산업육성에 2,013억 5,200만원 등 95.7%인 2조 5,595억 9,200만원이 지출되었음.
- 다음연도 이월액 881억 4,300만원은 산림재난관리 747억 900만원, 산림이용 및 복지증진 49억 1,600만원 등이며, 산림재난관리 159억 400만원, 산림자원 및 산업육성 35억 6,900만원 등 총 275억 6,4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음.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액 이용액				
[합 계]	2,188,082	467,021	20,196	-	122,172 △122,172	2,675,299	2,559,592	88,143	27,564
○ 국립수목원 (1100프로그램)	45,657	-	679	-	175 △175	46,336	39,817	5,608	912
- 국립수목원 인건비	6,230	-	-	-	150	6,380	6,350	-	30
- 국립수목원 기본경비	1,039	-	-	-	-	1,039	1,036	-	3
- 국립수목원 지원	38,388	-	679	-	25 △175	38,917	32,431	5,608	879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액 이용액				
○ 산림과학기술개발 (1200프로그램)	79,292	-	-	-	1,245 △245	80,292	78,625	1,329	338
- 국립산림과학원 인건비	22,832	-	-	-	1000 △8	23,824	23,716	-	108
- 국립산림과학원 기본경비	3,276	-	-	-	8	3,284	3,262	-	22
- 산림과학기술개발	50,364	-	-	-	237 △237	50,364	48,840	1,329	195
- 산림과학기술 정보화(정보화)	2,820	-	-	-	-	2,820	2,807	-	13
○ 국제산림협력 (1300프로그램)	33,862	-	-	-	-	33,862	33,382	-	480
- 국제산림협력	33,862	-	-	-	-	33,862	33,382	-	480
○ 산림자원 및 산림육성 (1500프로그램)	191,498	11,657	1,861	-	50 △105	204,961	201,352	40	3,569
- 산림정책 지원	11,008	-	-	-	-	11,008	10,851	-	157
- 종자 및 묘목 생산 관리	37,105	-	1,861	-	50 △50	38,966	36,722	40	2,204
- 임업인부채대책	8	-	-	-	-	8	4	-	4
- 목재생산관리	8,993	-	-	-	-	8,993	8,622	-	371
- 한국임업진흥원 지원	36,768	-	-	-	-	36,768	36,768	-	-
- 국유재산관리	67,594	-	-	-	△55	67,539	66,706	-	833
- 신기후체제 산림 자원관리 기술개발	30,022	11,657	-	-	-	41,679	41,679	-	-
○ 산림이용 및 복지 증진 (1700프로그램)	133,700	-	5,590	-	△10,535	128,755	121,492	4,916	2,347
- 산지관리	8,295	-	-	-	-	8,295	8,070	-	225
- 한국산림복지 진흥원 지원	44,661	-	-	-	-	44,661	44,661	-	-
-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운영	80,744	-	5,590	-	△10,535	75,799	68,761	4,916	2,122
○ 산림환경 보전 및 증진 (1900프로그램)	137,835	-	1,029	-	1,067 △2,582	137,349	133,706	1,456	2,187
- 산림생태보전	45,138	-	224	-	-	45,362	42,418	1,241	1,703
-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17,728	-	477	-	15 △1,530	16,690	16,099	180	412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액 이용액				
- 국립수목원 조성	3,967	-	328	-	1,052 △1,052	4,295	4223	35	36
- 한국수목원관리원 지원	57,942	-	-	-	-	57,942	57,939	-	3
- 정원 조성 및 관리	13,060	-	-	-	-	13,060	13,027	-	33
○ 산림재난관리 (2300프로그램)	660,449	337,220	11,037	-	115,357 △108,158	1,015,906	925,292	74,709	15,904
- 산림재해대응	208,707	174,000	3,765	-	108,110 △96,837	397,746	385,294	8,354	4,097
- 산불 예방 및 대응	57,869	43,630	729	-	520 △6,281	96,467	86,162	-	10,304
- 산림헬기	93,858	119,590	5,407	-	6,727 △966	224,616	158,614	65,582	420
- 산사태 예방 및 대응	300,015	-	1,136	-	△4,074	297,077	295,222	773	1,083
○ 산림행정지원 (7000프로그램)	195,246	-	-	-	4,277 △372	199,151	197,238	86	1,827
- 본청 인건비 (총액인건비)	31,735	-	-	-	1,380	33,115	33,072	-	43
- 소속기관 인건비 (총액인건비)	39,042	-	-	-	1,220 △35	40,227	40,032	-	195
- 지방산림청 인건비 (총액인건비)	51,249	-	-	-	1,490 △205	52,534	52,148	-	386
- 본청 기본경비	14,191	-	-	-	55 △14	14,232	13,698	-	534
- 산림항공본부 기본경비	2,459	-	-	-	67 △67	2,459	2,430	-	29
- 산림교육원 기본경비	936	-	-	-	14	950	917	-	33
- 국립산림품종관리 센터 기본경비	631	-	-	-	-	631	595	-	36
- 지방산림청 기본경비	11,634	-	-	-	-	11,634	11,341	-	293
- 산림행정지원	12,040	-	-	-	51 △51	12,040	11,910	-	130
- 산림자원 정보화	14,764	-	-	-	-	14,764	14,698	-	66
- 국가산림통계	16,565	-	-	-	-	16,565	16,397	86	82
○ 회계간거래 (8000프로그램)	710,543	118,144	-	-	-	828,687	828,687	-	-
- 회계간 전출(농특)	668,823	118,144	-	-	-	786,967	786,967	-	-
- 회계간 전출(책특)	41,720	-	-	-	-	41,720	41,720	-	-

※ 자료: 산림청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산림공간정보기반조성 :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구축) 감리 계획 수립 및 감리용역 추진 부실

- 산림청은 정보시스템 감리계획 수립 및 감리용역이 감리기준에 부합하도록 추진하고,

향후 정보화사업 추진 시 감리의무 대상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비를 본예산에 적정하게 반영함으로써 불확실한 재원에 의존한 사업운영 방식을 지양하고, 필수 사업요소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전제로 한 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관리의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산림청은 향후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시 감리용역 발주 시기를 사업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감리대상사업이 계약된 후 빠른 시일 내에 감리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감리가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사전적·단계별 품질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사업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산림공간정보기반조성 사업은 전국 산림의 지상부(나무)와 지하부(토양, 물)에 대한 분포현황과 변화를 공간정보(GIS)로 제작 및 현행화하여 산림의 면적과 변화를 관리하고, 플랫폼 구축을 통한 과학적인 산림정책 의사결정과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액 109억 9,800만 원을 편성하여 108억 6,700만 원을 집행하고, 8,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500만 원을 불용하였음.¹⁾

【 2025년도 산림공간정보기반조성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산림공간정보기반조성		10,998	-	-	10,998	10,867	86	45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구축		4,135	-	-	4,135	4,032	86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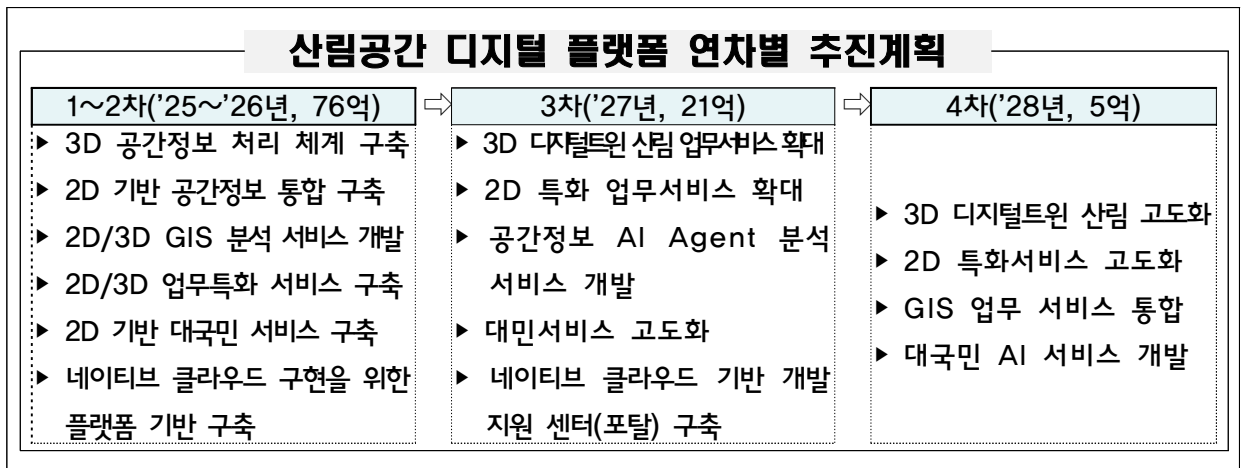
1)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산림공간정보기반조성(7036-301)

(나)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구축’은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간정보(GIS) 및 디지털트윈 기반의 과학적인 산림관리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4년 정보화전략계획(ISP)을 통해 4개년(’25년~’28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5년도 1단계 구축사업은 예산액 41억 3,500만원을 일반연구비(260-01)로 편성하여 40억 3,200만원을 집행하고, 8,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700만원을 불용하였음.

【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 연차별 사업계획 】



※ 자료 : 산림청

□ 산림청은 일반연구비 이월 발생 사유로, 플랫폼 구축 사업비에
감리비가 미반영됨에 따라 각 사업연도('25년, '26년)에 발생한
낙찰차액으로 감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낙찰차액이 소액(300만원) 발생함에 따라 1차연도 사업 예산 중
SW 구매계획 예산을 감리비로 배정하여 감리용역을 발주하였고,

감리 대상 사업(플랫폼 구축)이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되어
감리도 같은 기간 추진되어야 함에 따라 1차연도('25년)에 계약된
감리용역 사업은 연내 완료가 불가하여 사업비의 이월 불가피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감리의무화 대상임.²⁾

2)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64조제2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부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①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보시스템의 특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사업비(총사업비 중에서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서 정보시스템 감리의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여러 중앙행정기관등이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정보기술아키텍처 또는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정보시스템 개발 또는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정보시스템 감리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자정부법」은 정보시스템 감리의 업무범위, 절차 및 준수 사항 등 감리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에게 감리기준의 시행 및 적용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지하게 하고 있음.³⁾

이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⁴⁾」(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는 감리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정보시스템 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시 감리대상사업인지를 명확히 식별하여 대상일 경우 감리대상사업의 사업비에 포함하고,

감리비가 별도로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본 사업의 낙찰차액을 활용하도록 하며, 낙찰차액만으로 적정한 감리비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예산검토가 필요함을 공지하고 있음.

3)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감리의 업무범위, 절차 및 준수사항 등 감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 보안에 관한 사항은 관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3조(필요사항 공지) 행정안전부장관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에게 이 기준의 시행 및 적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보안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2.1 감리예산 확보(p.13)

정보시스템 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시 감리대상사업인지를 명확히 식별하여 대상일 경우 감리대상사업의 사업비에 포함하고, 감리비가 별도로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본 사업의 낙찰차액을 활용하도록 한다. 다만, 낙찰차액만으로 적정한 감리비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예산검토가 필요하다.

□ 그러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동 사업의 예산안 산출 근거(내역)에는 일반연구비(260-01)로 41억 3,500만원(구축비: 개발비 2,231백만원, HW,SW 1,904백만원)만 편성되었으며, 예산요구서 제출 단계부터 산림청의 감리비 예산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됨.

즉, 산림청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낙찰차액만으로는 적절한 감리비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어 사전에 신중한 예산검토가 필요함에도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비에 별도로 감리비를 편성하지 않고 불확실한 낙찰차액을 재원으로 감리용역을 추진할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남.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낙찰차액 규모가 사전에 확정되기 어렵고, 특히 동 사업은 조달청의 협상에 의한 계약(차등점수제) 적극 활용 요청⁵⁾에 따라 가격보다는 기술력 중심의 평가가 추진되었으며,

입찰 평가방법도 기술평가 90%(기술 9: 가격 1)가 적용⁶⁾되어 입찰자의 가격 하락요인이 없으므로,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산림청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임.

5) “협상에 의한 계약 ‘차등점수제’ 활용 안내”(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2496, '22.9.8)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21.7월부터 차등점수제 시행)

6)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8조(평가배점)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정보시스템 사업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한다.

* 차등점수제 : 기술 점수를 차등 평가함으로써 가격점수로 역전
및 낙찰됨을 방지하는 기술력 중심 평가 제도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기술능력 평가의 변별력 확보가 어려운 계약에 대하여
입찰자의 기술평가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 부여

실제로 동 사업의 플랫폼 구축 계약은 낙찰차액이 300만원(예산액
64억 4,300만원, 계약금액 64억 4,000만원)에 불과하여 감리용역 수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함.

이에 따라 산림청은 당초 SW 구매를 위해 편성된 예산을
감리비로 배정하여 감리용역을 발주하였으며,⁷⁾ 이는 결과적으로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감리 필요성과 소요 재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종합하면, 동 내역사업은 감리의무가 명확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① 기술평가 비중이 높은 업체 선정 방식을 계획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감리비를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불확실한
재원을 전제로 계획을 수립한 점,

② 실제 감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자 당초 SW 구매
예산을 이용하여 대응한 점 등에서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령의

7) 이에 대해 산림청은 SW 구매 예정이었던 기능을 플랫폼 구축 사업 내에서 직접 개발하
여 위험을 최소화하였다고 설명하나, 이는 사후적 합리화에 해당하며 당초부터 감리용
역에 대한 부실한 계획에 기인한 것임.

위임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에 반하여 정보시스템 감리계획이 수립되고 감리용역이 추진된 것으로 평가됨.

특히, 감리는 정보시스템 구축 과정의 품질 확보와 사업 위험 관리에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요소임에도, 이를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은 사업관리의 기본적인 적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한편, 동 구축 사업은 「전자정부법」 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⁸⁾ 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기간 6개월 이상에 해당하여 요구정의·설계·종료 단계별로 3회의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 3단계 감리 대상 사업에 해당함.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따르면, 발주자는 3단계 감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감리를 발주하여야 함.⁹⁾

또한,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는 감리용역 발주에서 주의할 사항으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3조(감리 실시시기)에

8)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감리의 업무범위, 절차 및 준수사항 등 감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 보안에 관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3조(감리 실시시기) ① 발주자는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3단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대상사업의 사업비가 20억원 미만이거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단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요구사항정의서의 과업내용 반영여부 등을 직접 점검하여야 한다.

*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3단계감리”란 감리대상사업의 요구정의, 설계, 종료 단계로 실시하는 감리를 말한다.

9)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6조(감리 발주 및 계약) ① 발주자는 제3조 각항에 따른 감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따른 요구정의 단계 감리를 수행할 경우에는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감리대상사업이 계약된 이후 빠른 시일 내에 감리용역 발주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공지하고 있음.¹⁰⁾

□ 그러나 감리비 부족 등으로 감리계약은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의 계약('25.5.1.) 이후 약 6개월이 경과한 11월 11일에야 체결되었음.

이 시점에는 이미 다수 세부사업에서 분석단계가 종료되고 설계 단계도 병행하여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됨.

【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 단계별 일정계획 】

연번	추진단계		시작일	종료일
1	프로젝트 관리		2025-05-01	2026-12-21
1.1		착수 및 계획수립	2025-05-01	2026-03-03
1.2		프로젝트 수행 및 통제	2025-05-12	2026-12-18
1.3		프로젝트 종료	2026-11-15	2026-12-21
2	2D 플랫폼		2025-07-01	2026-12-21
2.1		분석	2025-07-01	2025-07-31
2.2		설계	2025-08-01	2025-11-21
2.3		구현	2025-12-01	2026-06-30
2.4		테스트	2026-07-01	2026-09-30
2.5		전개 및 인도	2026-10-01	2026-12-21
3	운영관리		2025-06-02	2026-12-21
3.1		분석	2025-06-02	2025-10-24
3.2		설계	2025-08-14	2025-11-29
3.3		구현	2025-10-17	2026-09-30
3.4		테스트	2026-10-05	2026-11-30
3.5		전개 및 인도	2026-09-21	2026-12-21
4	3D 플랫폼		2025-07-01	2026-12-21
4.1		분석	2025-07-01	2025-10-31
4.2		설계	2025-10-01	2026-01-31
4.3		구현	2025-12-15	2026-07-31

10)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요구정의/분석/설계/구현/시험/전개 단계로 세분화할 수 있으며, 감리 수행 시점은 요구정의 단계 감리의 경우 요구정의 및 분석이 완료된 시점에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임. 다만, 감리용역 계약은 사전 감리 준비 시간을 고려해 요구정의 단계 종료 시점 이전에 계약체결이 필요함.

4.4		테스트실시	2026-07-01	2026-09-30
4.5		전개 및 인도	2026-08-03	2026-12-21
5	3D 제작 및 관리도구		2025-06-02	2026-12-21
5.1		분석	2025-06-02	2025-10-17
5.2		설계	2025-08-18	2026-01-31
5.3		구현	2025-10-02	2026-08-31
5.4		테스트	2026-10-01	2026-11-30
5.5		전개 및 인도	2026-09-21	2026-12-21
6	2D 특화서비스(2D 지도 Community)		2025-06-01	2026-12-21
6.1		분석	2025-06-01	2025-12-01
6.2		설계	2025-09-15	2026-02-15
6.3		구현	2026-01-02	2026-10-29
6.4		테스트	2026-10-05	2026-11-30
6.5		전개 및 인도	2026-09-21	2026-12-21
7	3D 특화서비스(3D 디지털트윈 산림)		2025-06-01	2026-12-21
7.1		분석	2025-06-01	2025-09-30
7.2		설계	2025-10-10	2025-12-31
7.3		구현	2026-01-02	2026-08-28
7.4		테스트	2026-10-01	2026-11-30
7.5		전개 및 인도	2026-10-01	2026-12-21
8	대국민 서비스		2025-06-01	2026-12-21
8.1		분석	2025-06-01	2025-12-02
8.2		설계	2025-11-10	2026-02-15
8.3		구현	2026-01-02	2026-10-02
8.4		테스트	2026-10-05	2026-11-30
8.5		전개 및 인도	2026-09-21	2026-12-21
9	데이터 관리체계		2025-06-02	2026-12-21
9.1		분석	2025-06-02	2025-10-24
9.2		설계	2025-10-27	2026-02-27
9.3		구현	2026-02-02	2026-08-07
9.4		데이터 이관	2026-08-24	2026-11-30
9.5		테스트	2026-10-05	2026-11-30
9.6		전개 및 인도	2026-06-26	2026-12-21

※ 자료 : 산림청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서 요구정의 단계 감리는 사업 초기 요구사항의 적정성 및 누락 여부를 점검하여 이후 설계·구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는 핵심 절차임에도, 해당 단계 감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사업관리의 효율성과 완성도 측면에서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산림청은 정보시스템 감리계획 수립 및 감리용역이 감리 기준에 부합하도록 추진하고,

향후 정보화사업 추진 시 감리의무 대상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비를 본예산에 적정하게 반영함으로써 불확실한 재원에 의존한 사업운영 방식을 지양하고, 필수 사업요소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전제로 한 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관리의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산림청은 향후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시 감리용역 발주 시기를 사업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감리 대상사업이 계약된 후 빠른 시일 내에 감리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감리가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사전적·단계별 품질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사업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목재생산관리

- 산림청은 친환경 목재생산 지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①산림소유자 참여 확대를 위한 친환경 목재생산 지원제도 소개, 사업방식, 보조금 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 작성 등의 적극적인 홍보·안내를 강화하고, 사업기준을 정비하여 친환경 목재생산 사업을 간소화하는 등 제도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며,
②친환경벌채 모니터링 및 목재수확 점검관리(사유림) 사업을 강화하여 친환경벌채 기준에 따른 목재생산 기반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산림청은 국산목재 및 원목(국내원목생산량) 자급률 등 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한 목재수요 동향과 지방자치단체별 친환경 목재생산 실적, 시·도별 실집행 현황, 제도 활성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요예측에 근거한 적정한 친환경 목재생산 지원금 예산 규모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목재생산관리 사업은 목재자원의 안정적 수급과 목재생산 기반 구축을 통한 국내 목재생산 확대 및 목재수확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등을 위해 국유림 목재생산, 목재생산 기반구축, 목재수확 사전·사후 관리, 목재수확 타당성조사, 긴급벌채 및 친환경 목재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액 78억 4,700만원을 편성하여 75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3,900만원을 불용하였음.¹¹⁾

11)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목재생산관리(1540-300)

【 2025년도 목재생산관리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목재생산관리	7,847	-	27 △27	7,847	7,508	-	339	7,540
-친환경 목재생산	1,125	-	-	1,125	1,125	-	-	788

(나) 검토의견

(1) (친환경 목재생산) 친환경벌채 지원 제도 운영 미흡 및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 내역사업인 ‘친환경 목재생산’은 친환경벌채 기준에 따라 공익
으로 존치한 수목에 대해 산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액 11억 2,500만원을 편성하여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지방자치
단체(8곳)에 전액을 교부하였으나, 보조사업 실행액(전년도 이월액
1천만원 제외)은 2억 2,500만원으로 실행률은 20%에 불과함.¹²⁾

【 2025년도 친환경 목재생산 사업 실행내역 】

(단위 : 백만원, %)

피보조 기관명	산림청			사업시행주체(피보조 기관)								
	예산		집행 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행 률 (C/A)
	본예 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합계	1,125	1,125	1,125	1,125	10	1,135	233	1,125	225	6	894	20.0
경기도	62	62	62	62	-	62	1	62	1	-	61	1.6
강원도	173	173	173	173	-	173	59	173	59	-	114	34.1
충청북도	136	136	136	136	-	136	46	136	46	6	84	33.8
충청남도	160	160	160	160	-	160	23	160	23	-	137	14.4
전라북도	122	122	122	122	10	132	8	122	-	-	122	-
전라남도	209	209	209	209	-	209	36	209	36	-	173	17.2
경상북도	141	141	141	141	-	141	48	141	48	-	93	34.0
경상남도	122	122	122	122	-	122	12	122	12	-	110	9.8

※ 자료 : 산림청

12) 교부대상 지방자치단체(8곳) :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 ‘친환경 목재생산’ 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2023년 6월부터 생태·경관·재해 위험 최소화를 위해 벌채구역이 5ha 이상인 경우 20% 이상의 산림을 남기도록 친환경벌채를 의무화하고,

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산림소유자의 손실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지원금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되고 있음.¹³⁾

1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④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생태·경관·재해위험을 최소화하여 벌채한 경우 벌채구역 내 남겨진 입목의 판매를 전제로 예상되는 수익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친환경벌채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①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생태·경관·재해위험을 최소화하여 벌채(이하 “친환경벌채”라 한다)를 한 경우의 지원금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금 지원대상자: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토지 소유자와 입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입목소유자를 말한다)로서 친환경벌채를 실시한 자
2. 예상되는 수익금 산정방법: 입목의 시장가격에서 벌채 및 운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하여 산정
3. 지원금 지급대상 입목축적(立木蓄積)의 범위: 벌채구역 내 총 입목축적의 100분의 20 이하
4. 지원금 지급대상 벌채구역의 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현지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을 결정해야 한다.

④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친환경벌채에 따라 남겨진 입목에 대하여 입목벌채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에 지원금 지급일부부터 반환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가산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환하지 않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신청, 현지조사, 지원금 산출 및 지급절차 등 친환경벌채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

2. 벌채기준

가. 수확을 위한 벌채

□ 그런데 동 내역사업의 연도별 실집행내역을 보면, 도입 첫해는 실집행률이 0.7%(10억 5,700만원 불용)이고, 2024년은 실집행률이 13%(9억 9,000만원 불용)이며, 2025년도 실집행률은 20%(8억 9,400만원 불용)로 매우 저조한 실정임.

산림청은 2023년의 경우 ‘지원금 지급을 위한 절대적인 기간 부족’을, 2024년과 2025년은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목재생산량 및 대면적 목재수확지 감소’를 보조사업 실집행부진사유로 설명하고 있음.

실제 최근 연도별 국산원목 자급률 통계에서도 국내재와 수입재를 합한 원목공급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 모두배기

(가) 1개 별채구역의 면적은 최대 30만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별채구역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군상(群像) 또는 수림대(樹林帶)로 남겨 두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이 나무아래 심기 등 단목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단목으로 남겨둘 수 있다.

①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임업후계자로 선발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독립가로 선정된 자의 1개 별채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 ① 이외의 경우로서 1개 별채구역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국산원목 자급률 현황('21년~'24년)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원목 공급량 (천 m³)	계	6,844	6,310	5,808	5,177
	국내재	3,811	3,700	3,723	3,510
	수입재	3,033	2,610	2,085	1,667
원목자급률(%)		55.7	58.6	64.1	67.8

주) 원목자급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국내재 대비 수입재의 하락폭이 큰 것에 기인함.

※ 자료 :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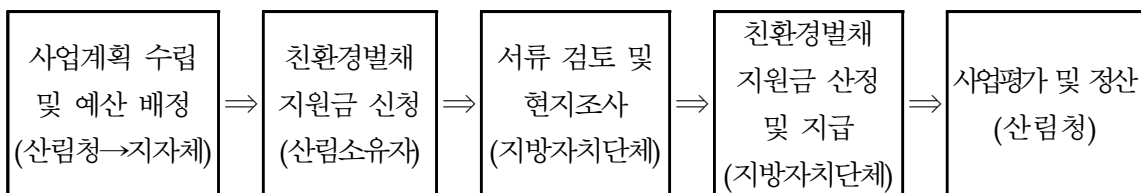
□ 이처럼 친환경 목재생산 지원제도 도입 이후,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향후 목재 이용량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

□ 현재 친환경벌채 지원금 신청이 저조한 원인으로 현장에서는 산주의 경우, 제도 및 사업방식, 보조금 지원에 대한 인식 부족과 신청서류 작성 등의 절차적 어려움이 문제로 지적됨.

반면, 보조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청검토와 현지조사 등에 따른 행정 부담과 벌채 관련 부정보도에 대한 우려로 5ha 이상 입목벌채 허가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현행법 시행령(제42조의2) 및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
(산림청고시)에 따라 친환경벌채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가 지원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제출
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서류 검토 및 현지 조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을 결정해야 하는 만큼,

【 친환경 목재생산 사업 집행 절차 】



※ 자료 : 산림청

현장에서 동 제도가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먼저, 친환경
목재생산 지원제도 소개, 사업방식, 보조금 신청 절차 및 신청
서류 작성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복잡하게 여겨지는 사업기준(존치구역의 작업방법 및 산정 기준 등)도
정비하여 친환경 목재생산 사업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또한,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목재생산 기반구축’ 및 ‘목재수확
사전·사후 관리’ 사업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벌채 모니터링 및
목재수확 점검관리(사유림) 사업을 강화하여 친환경벌채 기준에

따른 목재생산 기반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¹⁴⁾

□ 따라서 산림청은 친환경 목재생산 지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①산림소유자 참여 확대를 위한 친환경 목재생산 지원제도 소개, 사업방식, 보조금 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 작성 등의 적극적인 홍보·안내를 강화하고, 사업기준을 정비하여 친환경 목재생산 사업을 간소화하는 등 제도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며,

②친환경벌채 모니터링 및 목재수확 점검관리(사유림) 사업을 강화하여 친환경벌채 기준에 따른 목재생산 기반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14) ‘목재생산 기반구축’ 사업은 목재생산 기반구축을 통한 국내 목재생산 확대를 위해 통계 조사 및 목재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25년 기준 벌채지 모니터링에 2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고, ‘목재수확 사전·사후 관리’ 사업은 목재수확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목재수확 허가(신고) 대상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현장입간판 설치 등을 하는 것으로 ‘25년 기준 목재수확 점검관리(사유림)에 13억 4,000만원(10,037ha)이 편성되었음.

(2) (친환경 목재생산) 수요예측에 근거한 적절한 예산규모를
재산정할 필요

□ 친환경 목재생산 지원 사업은 의무보전 면적 발생에 따른 산주
손실의 국가 지원을 통해 친환경 목재수확을 활성화하려는 법률
신설 취지와는 달리, 3개년('23~'25) 연속으로 매우 낮은 집행률
(0.7%→13%→20%)과 대규모 불용이 반복되고 있음.

【 '23~'25년 친환경 목재생산 지원금 지급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신규)			2024년			2025년		
	예산	집행액	실집행률	예산	집행액	실집행률	예산	집행액	실집행률
합 계	1,125	8	0.7	1,125	146	13.0	1,125	225	20.0
경 기	79	-	-	79	9	11.4	62	1	1.6
강 원	159	-	-	159	31	19.5	173	59	34.1
충 북	134	-	-	134	11	8.2	136	46	33.8
충 남	162	-	-	162	11	6.8	160	23	14.4
전 북	125	2	1.6	125	11	8.8	122	-	-
전 남	199	4	2.0	199	19	9.5	209	36	17.2
경 북	150	2	1.3	150	46	30.7	141	48	34.0
경 남	117	-	-	117	8	6.8	122	12	9.8

※ 자료 : 산림청

당초 친환경 목재생산 지원금 예산은 소요물량을 연간 5ha 이상
벌채 면적(5,624ha^{추정})의 20% 수준인 1,125ha로 예상하고, 단가는
산주가 1ha 벌채 시 얻게 되는 통상수입인 평균 200만원을

반영해 11억 2,500만원($5,624\text{ha} \times 20\% \times 2\text{백만원} \times \text{지자체보조율 } 50\%$)으로 산출하였으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동일 예산액이 편성되고 있음.¹⁵⁾

이후 산림청은 친환경 목재생산 사업면적 및 실집행률을 고려하여 2026년도 예산액은 7억 8,800만원($3,940\text{ha} \times 20\% \times 2\text{백만원} \times \text{지자체보조율 } 50\%$)으로 30% 감액하였음.

□ 그러나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입목벌채 허가면적(친환경 목재생산 보조금 집행 8개 시·도 기준)은 매년 감소하고 있고, 산림소유자의 지원금 미신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대응 등으로 2026년 5월 현재 보조기관 실집행액은 1,450만원(강원 200만원, 충북 1,250만원)에 불과한 실정임.

【 '22~'25년 친환경 목재생산 현황 】

(단위 : ha)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8월)
입목벌채 허가면적	24,272	22,225	21,945	11,703
친환경 목재생산 면적	2,859	2,663	3,229	1,732

주) 8개 시·도 기준(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자료 : 산림청

15) 산주가 1ha 벌채 시 얻게 되는 통상수입은 산림경영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표4-4 산림경영인의 입목 판매가격 조사('1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름.

□ 따라서 산림청은 국산목재 및 원목(국내원목생산량) 자급률 등 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한 목재수요 동향과 지방자치단체별 친환경 목재생산 실적, 시·도별 실집행 현황, 제도 활성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요예측에 근거한 적절한 친환경 목재생산 지원금 예산 규모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3) 농림위성융합 지능형 산림특화정보기반연구(R&D) : 연구개발 사업의 과제 종료 시점에 임박한 연구장비 구입 지양

- 산림청은 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연구성과 창출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향후 연구개발(R&D) 사업 추진 시 연간 집행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과제 종료 시점에 임박하여 연구장비 구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소속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 등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농림위성융합 지능형 산림특화정보기반연구(R&D) 사업은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 2단계('19~'25) 추진 확정에 따라 2025년 발사 후 농림위성 산림정보를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활용기술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액 65억 9,600만원을 편성하여 65억 7,700만원을 집행하고, 1,900만원을 불용하였음.¹⁶⁾

16)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농림위성융합 지능형 산림특화정보기반연구(R&D)(1251-402)

【 2025년도 농림위성융합 지능형 산림특화정보기반연구(R&D)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농림위성융합 지능형 산림특화정보기반연구 (R&D)	6,596	-	-	6,596	6,577	-	19	-
농림위성 지능형 산림정보 활용기반 구축 연구	5,714	-	-	5,714	5,705	-	9	-

(나)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농림위성 지능형 산림정보 활용기반 구축 연구’는 산림전용 위성활용기술 개발 연구를 위한 국가산림위성정보 센터 신축과 농림위성정보 수신처리 및 지능형 산림정보 분석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액 57억 1,400만원을 편성하여 57억 500만원을 집행하고, 900만원을 불용하였음.

동 내역사업은 2021년부터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직접수행하여 2025년에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기 구축된 시스템 및 장비의 운영과 유지보수, 산출물 서비스 등은 산림과학연구(R&D) (1251-300)와 산림과학원정보화(1252-500) 사업으로 통합운영하고 있음.

- ‘농림위성 지능형 산림정보 활용기반 구축 연구’를 위한 2025년 예산액은 연구과제 8억 5,000만원(일반연구비 8억원 및 시험연구비 5,000만원), 상용임금 3,700만원, 연구장비(자산취득비) 48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동 내역사업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연구과제 8억 4,800만원, 상용임금 3,600만원, 연구장비 48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음.

【 2025년도 예산 편성근거 및 집행내역 】

세사업 명	구분	내 용
농림위성 지능형 산림정보 활용기반 구축 연구	편성 근거	○ 농림위성 지능형 산림정보 활용기반 구축 연구 : 5,714백만원 - 연구과제 : 2과제 850백만원 - 상용임금 : 1명 37백만원 - 연구장비 : 1식 4,827백만원
	집행 내역	○ 농림위성 지능형 산림정보 활용기반 구축 연구 : 5,705백만원 - 연구과제 : 2과제×424백만원=848백만원 - 상용임금 : 1명 36백만원 - 연구장비 : 1식 4,821백만원

※ 자료 : 산림청

□ 이 중 연구장비 구입비 48억 2,100만원 상세 집행내역을 보면, 산림과학원은 당초 편성 목적인 ‘2025년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산림위성정보시스템 인프라구축(2단계) 및 관련 S/W 구매’로 36억 4,047만원(조달수수료 1,650만원 포함)을 6월에 집행하였고,

조달청 경쟁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 11억 8,653만원(불용액 900만원 포함)은 산림과학원 자체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집행잔액을 재배정하여 집행함.

특히, 집행잔액 중 8억 8,150만원(20건, 조달수수료 제외)은 연말인 11월 및 12월에 집행됨.

□ 산림과학원은 입찰공고기간, 납품소요기간 등으로 연말에 자산취득비 집행이 집중되었다는 설명이나, 동 사업의 집행절차를 보면 과제 종료 시점인 11~12월에는 계속과제 결과평가와 연구성과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고,

【 동 사업 집행절차 】

신규과제 기획	계속과제 추진	주관	<시기>
			2024년
기술수요조사		연구기획과	<9~11월>
대·내외 환경 분석 기술수요조사 분석		과제기획위원회	<12월>
			2025년
과제기획 및 선정지침 통보		과제기획위원회	<1월>
과제제안서 작성·검토		프로그램위원회 과제기획위원회	<1~3월>
과제기획보고서 작성 및 제출		프로그램위원회	<3월>
차년도 연구과제 선정(신규) 및 확정(계속)		과제선정위원회(원장)	<4월>
신규과제 설계심의 1차		전략과제협의회	<6~7월>
차년도 연구과제 계획검토(산림청)		원장→산림청장	<6~7월>
신규과제 설계심의 2차		프로그램위원회	<9~10월>
	계속과제 결과평가 및 차년도 계획 심의	전략과제협의회 프로그램 위원회	<11~12월>
신규과제 설계 확정	계속과제 결과평가 및 차년도 계획 확정	산림과학연구심의회 (원장)	<12월>
	연구성과 자체평가 보고서	원장→산림청장	<12월>
차년도 연구계획 검토의견 반영결과 보고서			
			2026년
연구사업 계획서 제출		원장→산림청장	<1월>
	연구사업 보고서 제출	원장→산림청장	<2월>

※ 자료 : 산림청

실제 동 사업의 2025년 연구과제(일반연구비) 전체 계약 현황을 살펴봐도 유지관리 및 감리용역 계약(각 1건)을 제외한 13건의 위탁연구 계약 기간은 모두 4월(6월 1건)부터 11월(10월 1건)까지로

10월 또는 11월에 과제 연구가 종료되고 최종보고서가 제출되는 것을 알 수 있음.

【 2025년 일반연구비(260-01) 계약 현황 】

(단위 : 백만원)

세부 사업명	과제명	계약액	계약기간	최종보고서 제출일
농림위성융합 지능형 산림특화정보 기반연구 (1251-402)	(위탁)산림재해 농림위성 산출물 모듈 안정화 및 ATBD 작성	49	'25.4~'25.10	'25.10
	(위탁)농림위성 정사영상 자동화기술 안정화/최적화 및 ATBD 작성	138	'25.4~'25.11	'25.11
	(용역)농림위성 지상국시스템연계 산출물 알고리즘 최적화/현업화	192	'25.4~'25.11	'25.11
	(위탁)산림 식물계절지도 농림위성 산출물 모듈 안정화 및ATBD 작성	49	'25.4~'25.11	'25.11
	(위탁)산림 엽면적지수 농림위성산출물 모듈 안정화 및 ATBD작성	49	'25.4~'25.11	'25.11
	(위탁)산림생태계 총일차생산성농림위성 산출물 모듈 안정화및 ATBD 작성	49	'25.4~'25.11	'25.11
	(위탁)산림생육스트레스지수 농림위성 산출물 모듈 안정화 및ATBD 작성	49	'25.4~'25.11	'25.11
	(위탁)농림위성 지형보정 안정화/ 최적화 및 ATBD 작성	29	'25.4~'25.11	'25.11
	(위탁)농림위성 Forest ARD 안정화/ 최적화 및 ATBD 작성	98	'25.4~'25.11	'25.11
	(위탁)농림위성 기반 산림경영활동 및 산지 훼손지 탐지 알고리즘 최적화/ 안정화	49	'25.4~'25.11	'25.11
	(위탁)이종센서를 활용한 임분고 추정 알고리즘 최적화 및 안정화	49	'25.4~'25.11	'25.11
	(위탁)북한 및 해외 산림변화 탐지 알고 리즘 최적화/안정화	49	'25.4~'25.11	'25.11
	(용역) 2025년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농림위성 지상국 시스템 구현.안정화(1단계)	345	'25.6~'25.11	'25.11

주) 유지관리 및 감리용역 각 1건 제외

※ 자료 : 산림청

□ 그런데도, 산림과학원은 동 내역사업의 연구장비 구입비 집행
잔액 중 8억 8,150만원(20건, 조달수수료 제외)을 11월 및 12월에
집행하면서, 집행잔액으로 구입한 모든 장비는 동 내역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과제 및 기획·지원용 장비 구매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상 연구장비는 해당 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정 시점에 도입되어야 하며,

12월에 구입한 문서세단기, 사무용 전산장비(PC), 프린터, 모바일 등 사무용 기기를 포함한 연말 구입 장비 등이 위성사업 수행 지원을 위한 장비라고 하더라도,

연구과제 종료 시점에 해당 장비들이 당해연도 연구수행에 실질적으로 활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2025년 11월 및 12월 연구장비 구입 현황 】

(단위 : 원)

자금 이체일	금액	건명	내역사업 관련 유무 및 용도 (국립산림과학원 답변)
11. 5	88,200,000	(자산) 위성영상(GIS) 분석 프로그램 구매	(해당) 산림재해 상시감시 및 생태계 모니터링을 위한 농림위성 융합 산출물 개발
11.11	484,000	(자산) 산림특화정보기반 연구를 위한 영상회의 스피커 구매	(해당) 연구 기획 및 지원
11.12	57,000,000	(자산) 이동형 기상·토양수분 관측 시스템	(해당) 산림재해 상시감시 및 생태계 모니터링을 위한 농림위성 융합 산출물 개발
11.12	20,500,000	(자산) 영상회의장비 구매	(해당) 농림위성정보 수신처리ARD 표준화 및 지능형 산림정보 플랫폼 개발
11.17	28,600,000	(자산) 휴대용직달일사량계	(해당) 농림위성정보 수신처리ARD 표준화 및 지능형 산림정보 플랫폼 개발
11.21	50,000,000	(자산) 농림위성 검보정 타워	(해당) 농림위성정보 수신·처리·ARD 표준화 및 지능형 산림정보 플랫폼 개발
11.26	82,000,000	(자산) 옥외 LED 디스플레이	(해당) 산림재해 상시감시 및 생태계 모니터링을 위한 농림위성 융합 산출물 개발
12. 2	29,300,000	(자산) 농림위성 엽면적지수 지상 관측망(DHP)	(해당) 산림재해 상시감시 및 생태계 모니터링을 위한 농림위성 융합 산출물 개발

12. 2	918,000	[자산] 문서세단기	(해당) 농림위성정보 수신처리ARD 표준화 및 지능형 산림정보 플랫폼 개발
12. 3	94,000,000	(자산) 폐회로 기체분석장비	(해당) 농림위성정보 수신처리ARD 표준화 및 지능형 산림정보 플랫폼 개발
12. 3	87,000,000	(자산) 개회로 기체분석장비	(해당) 농림위성정보 수신처리ARD 표준화 및 지능형 산림정보 플랫폼 개발
12. 8	2,640,000	(자산) 바디캠	(해당) 연구 기획 및 지원
12. 8	8,228,000	(자산) 사무용 전산장비(PC) (데스크톱컴퓨터)	(해당) 연구 기획 및 지원
12.18	88,660,000	(자산) 전천산란분광일사계 구매	(해당) 농림위성정보 수신처리ARD 표준화 및 지능형 산림정보 플랫폼 개발
12.18	1,155,000	(자산) 영상회의 카메라	(해당) 연구 기획 및 지원
12.18	31,400,000	(자산) 위성항법시스템(GPS) 구매	(해당) 산림재해 상시감시 및 생태계 모니터링을 위한 농림위성 융합 산출물 개발
12.23	7,722,000	(자산) 프린터	(해당) 연구 기획 및 지원
12.23	92,950,000	(자산) 플렉스관측용 타워 구매	(해당) 농림위성정보 수신처리ARD 표준화 및 지능형 산림정보 플랫폼 개발
12.24	94,512,580	(자산 외자) 이동형 가스분석기 수입보증금 납부	(해당) 산림자원 평가 및 모니터링을 위한 농림위성 융합 산출물 개발
12.30	16,234,900	(자산) 모빌랙	(해당) 연구 기획 및 지원
합계	881,504,480		

※ 자료 : 국립산림과학원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도입·관리·운영 및 공동활용 등을
위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르면,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려는 경우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
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요청 시 최종(단계) 과제 종료 시점
(2개월 전)에 임박하여 연구시설장비가 구축되지 않도록 심의에
소요되는 일정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도 국가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연구장비를 구입할 경우,¹⁷⁾ 과제 종료 시점에 임박하여 연구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⁸⁾

이러한 취지를 볼 때, 농림위성 R&D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시스템 인프라구축(2단계) 및 관련 S/W 구매(36억 4,047만원)’ 건 외에도 남은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추가 구입한 연구장비도 과제 종료 시점에 임박한 구입은 집행지침 및 관련 규정 등의 취지에 반하는 것임.

따라서 산림청은 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연구성과 창출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향후 연구개발(R&D) 사업 추진 시 연간 집행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과제 종료 시점에 임박하여 연구장비 구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소속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 등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7) 연구장비 구입비 중 당초 ‘2025년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산림위성정보시스템 인프라구축(2단계) 및 관련 S/W 구매(36억 4,047만원)’ 건은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음.

18) 집행지침에서는 자산취득비와 관련해서도 각 중앙관서의 장은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4) 한국임업진흥원 지원 : (신청사 설립) 보조금 집행대책 마련
및 향후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산림청은 한국임업진흥원 신청사 설립 사업 지연에 따라 보조금의 집행 부진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예산 집행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추진 일정이 연장될수록 임시청사 임차료 등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설계 공모 과정에서의 미흡했던 사업준비로 인한 설계 공모 소송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사업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임업진흥원 지원 사업은 임업소득 증대 및 임산업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한국임업진흥원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을 위한 인건비·경상경비·사업비·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액 367억 6,800만원을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전액을 한국임업진흥원에 교부하였음.¹⁹⁾

【 2025년도 한국임업진흥원 지원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한국임업진흥원 지원	36,768	-	-	36,768	36,768	-	-	24,284

19)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한국임업진흥원 지원(1542-300)

(나) 검토의견

- ☐ 한국임업진흥원은 2021년 지방(대전) 이전이 결정되면서,²⁰⁾ 당초 2023년~2026년까지 총사업비 545억 3,600만원(국비 228억 6,500만원, 자부담 316억 7,100만원)을 들여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에 신청사를 설립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

【 (당초) 한국임업진흥원 신청사 설립 사업 개요 】

- ☐ (기간) '23년~'26년까지
◦ 건축기획, 설계, 토지매입 : '23년~'24년 / 공사 : '25년~'26년

☐ (장소) 유성구 장대동 일원(교통·접근성 최우선 반영하여 선정)
◦ 고속도로(호남), 지하철(1호선), BRT 신설('24년) 등 교통현황 양호

☐ (예산) 54,536백만원(국비 22,865백만원, 자부담 31,671백만원)
※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 (형태) 목조 건축을 통해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전략 적극 이행

☐ (이전 계획)
◦ (1차 이전) 주무부처 소유 건물(대전시 유성구 계산동) 입주 방식을 통한 이전
◦ (2차 이전) 신청사(대전시 유성구 장대동) 건립을 통한 이전

- ☐ 당초에 한국임업진흥원은 건축기획, 설계, 토지매입을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완료하고, 공사를 2025년부터 2026년에 완료하여 대전으로 이전('26. 12.)하는 것을 계획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였음.

20) 【지방(대전) 이전 추진 경과】

- 대전 개별이전 공공기관 확정(국가균형발전심의위원회 의결)·고시(국토교통부, '21.10월)
- '23년(상반기) 임업기술실용화센터 건립(1차이전, 61명) 및 '26년말 신청사 건립(2차이전, 145명)을 포함한 이전계획 승인(국토교통부, '22년 12월)
- (1차이전) 1본부 5부서(63명) 임업기술실용화센터 1차이전 완료('23.6월)

□ 그러나 한국임업진흥원은 2023년도에 건축기획 착수 지연으로 설계 입찰공고('23. 12.~'24. 3.) 등의 당초 일정이 지연된 가운데, 2024년 설계 공모에 탈락한 업체가 '당선자 결정 무효 등 청구의 소'를 제기('24. 7. 8.)하여 1심에서 한국임업진흥원장이 일부 패소('25. 3. 20.)하고, '설계 용역 등 기타 일체의 후속절차 이행 금지' 가처분이 인용('25. 4. 8.)되면서, 설계 계약은 진행률 84% 수준에서 후속 절차가 중단되었음.

당시 행정소송의 청구취지를 보면, 원고(설계 공모에 탈락한 업체)는 설계 공모 심사 및 발표 과정에서 ①익명성 위반, ②실시간 공개 규정 위반, ③심사위원회 구성 위반, ④심사위원 회피, 제척규정 위반 등 절차적 사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익명성 위반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사실이 일부 인정된 만큼, 설계 공모 과정의 사업준비가 미흡했던 것을 알 수 있음.

이후 한국임업진흥원은 서울고등법원에 본안에 대한 항소('25. 4. 7.)와 가처분에 대한 즉시항고('25. 5. 8.)를 제기하였고, 2026년 4월 29일에서야 한국임업진흥원장이 승소²¹⁾하여 설계용역 잔여 공정이 재개되면서, 신청사 입주 시점도 당초 계획('26. 12.) 보다 2년 뒤('28. 12.)로 늦춰지게 되었음.

21) 본안 항소심 및 가처분 항고심 결과('26.4.29.)는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최종 확정됨 (항소심 확정 '26.5.14., 가처분 항고심 확정 '26.5.8.).

□ 신청사 설계 공모 소송에 따른 사업 지연(설계용역 중지: '25.2.~'26.4.)으로, 2024년에 편성하여 2025년으로 이월한 설계비가 불용(8억 5,430만원)되고, 2025년에 편성한 공사·감리비(94억 2,751만원)가 다시 이월되는 등 매년 보조금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임.

【 연도별 신청사 설립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산립청		사업시행주체(임업진흥원)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실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3	830	830	830	-	830	111	719	-	13.4
2024	1,011	1,011	1,011	719	1,730	830	897	3	48.0
2025	9,463	9,463	9,463	897	10,360	78	9,428	854	0.7
2026	-	-	-	9,428	9,428	-	-	-	-

주1) ('25년도 실집행내역) 각종 설계인증 및 조달청 적정성 검토 수수료 등 78백만원

('25년도 불용액) 신청사 설계비 854백만원

주2) ('25년도 공사·감리비 9,428백만원)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 25조제2항제4호(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따라 소송에 따른 지연으로 산립청장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이월하고, '26년 예산은 미편성함.

※ 자료 : 한국임업진흥원

또한, 신청사 설립 지연에 따라 대전 임시청사 임차관리, 임시청사 철거복구, 전산시스템 이전, 이사비 등으로 당초 계획 대비 약 21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파악됨.

【 신청사 설립 지연에 따른 추가 발생비용 】

(단위 : 백만원)

회계 연도	당초('26년 완공 후 입주)		변경(임차 이전 후 청사 입주)	
	내역	예산	내역	예산
2026	- 청사 임차관리비(서울)	1,079	- 청사 임차관리비(서울)	1,079
	- 청사 이사비(서울-대전)	141.0		
	- 전산시스템 이전비(서울-대전)	757.8		
	- 청사 철거복구비(서울)	496.8		
	- 사무용 자산취득비(신청사)	346.2		
	- 직원(137명) 이사비(서울-대전)	171.3		
2027	- 직원(137명) 아주지원비(서울-대전)	328.8	- 청사 임차관리비(대전)	488.0
			- 청사 조성비(대전)	456.7
			- 청사 이사비(서울-대전)	141.0
			- 전산시스템 이전비(서울-대전)	757.8
			- 청사 철거복구비(서울)	496.8
			- 직원(137명) 이사비(서울-대전)	171.3
			- 직원(137명) 아주지원비(서울-대전)	328.8
2028	- 직원(137명) 아주지원비(서울-대전)	328.8	- 청사 임차관리비(대전)	502.6
			- 청사 이사비(대전-신청사)	141.0
			- 전산시스템 이전비(대전-신청사)	265.8
			- 청사 철거복구비(대전)	253.5
			- 사무용 자산취득비(신청사)	346.2
			- 직원(137명) 아주지원비(서울-대전)	328.8
합계	'26년~'28년 합계	3,649.7	'26년~'28년 합계	5,757.3

※ 자료 : 한국임업진흥원

□ 한국임업진흥원은 소송 확정 이후 신속히 설계를 마무리하고
감리·공사의 입찰·계약을 연내 완료하며, 서울 본원의 대전 조
기 이전 및 청사 규모 축소를 통해 대전 임시청사 임차관리비
(’27년, ’28년)를 서울 본원 대비 약 23억원 절감하겠다는 계획
이나,²²⁾

22) 조기 이전을 통한 비용 절감 계획(안)

당초 계획대로 2026년도에 신청사가 준공되어 입주가 이루어졌으면 2027년과 2028년에 대전 임시청사 임차관리비 등의 추가 소요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2026년으로 이월된 공사·감리비(94억 2,751만원)의 경우에도 착공 시기는 12월로 예상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중 대부분(예상액 82억 2,000만원, 약 87%)은 재이월²³⁾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사업 지연에 따른 집행부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임.

더욱이 작년 국회 예결산 심사 과정에서 한국임업진흥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²⁴⁾ 당시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5년 9월까지 소송 승소를 통한 연내 설계 완료 및 2027년까지 준공을 추진하면서 승소 후 사용승인(준공)까지 최소 28개월(공사 기간 20개월) 소요를 예상하였음.

구분	전용면적	'27년, '28년 임차관리비	비고
서울본원	3,173.2m ²	3,317백만원	* 임차관리비 국고 2,158백만원 및 초과분 1,159백만원 포함
대전본원 후보청사	2,312.6m ²	991백만원	
절감량 (절감률)	860.6m ² (27.1%)	2,326백만원 (70.1%)	

※ 자료 : 한국임업진흥원

23)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의2(보조사업비의 재이월) ① 제25조에 따라 이월한 경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이월한 경비
2. 제25조제2항제3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이월한 경비 중 이월한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월한 경비 중 이월한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입찰공고 후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24) 한국임업진흥원, 「신청사 건립 개요」

소송 확정이 2026년 5월로 늦춰지면서 임업진흥원은 이후 실시 설계 적정성 검토, 총사업비 조정, 감리 및 공사 발주·입찰·계약을 연내 완료하고 12월부터 공사에 착공하여 2028년 11월까지 사용승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나,

이는 작년 추진계획과 같이 최소 소요 기간을 고려한 일정으로 총사업비 조정, 감리·공사 입찰·계약 등의 과정에서 지연이나, 12월 착공해 2027년 초에 진행되는 토목·구조 공사의 동절기 작업 문제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추가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신청사 설립 사업 향후 추진 계획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6	소송 지연				설계 종료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총사업비 조정 감리 발주·입찰		공사 발주·입찰		착공
2027	토목·구조 공사						건축·전기·통신·소방·조경·인테리어·어린이집 공사					
2028	건축·전기·통신·소방·조경·인테리어·어린이집 공사								마감·준공·사용승인		입주	

※ 자료 : 한국임업진흥원

특히, 동 사업은 국내 최고 높이(30.4m)의 고층 목구조 건축으로 추진됨에 따라 기존 목조건축보다 공사의 난이도가 높고 안전성 문제도 공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음.²⁵⁾

25) 최근 국내 고층 목조건축 사례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의 경우, 시공기간 만 35개월(’21.12월~’24.10월)이 소요됨.

□ 따라서 산림청은 한국임업진흥원 신청사 설립 사업 지연에 따라 보조금의 집행부진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예산 집행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추진 일정이 연장될수록 임시청사 임차료 등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설계 공모 과정에서의 미흡했던 사업 준비로 인한 설계 공모 소송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사업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구 분	내 용
위치 / 용도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2025번지 / 교육연구시설
연면적	9,812.39㎡
규모	본관동 : 지하1층~지상7층 / 교육동 : 지하1층~지상3층
건축구조	목구조(CLT, GLT) + 철근콘크리트구조
사업기간	2020년 1월 ~ 2024년 10월 (설계) 2020년 1월 ~ 2021년 9월 (시공) 2021년 12월 ~ 2024년 10월
총사업비	650억 원 (토지매입) 173억, (설계) 20억, (공사) 400억, (감리) 32억, (부대비) 25억
주요내용	- 총 목재 사용량 1,363㎥ 중 국산목재 71% 사용 - 중목구조 : 967㎥(국산 낙엽송) - 경목구조 : 396㎥(외산재 SPF) - 2시간 내화 구조

※ 참고로 한국임업진흥원 신청사의 경우, 연면적 8,459㎡, 지하1층~지상7층 규모, 목구조+철근콘크리트 구조, 총사업비는 545억원임.

5) 산림휴양등산증진 : (공립밀양산림레포츠센터 조성) 보조금
교부지침 위반 및 전액 환수에 대한 철저한 정산관리 필요

- 산림청은 공립밀양산림레포츠센터 조성 사업의 국고보조금 교부 여부 결정 시 보조사업 계획의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나 분할교부 등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교부방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교부 및 관리함으로써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였으므로, 향후 산림레포츠센터 조성 사업 추진 시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공립밀양산림레포츠센터 조성에 교부된 2024년 및 2025년 국고보조금 전액(이자 포함)이 조속히 환수될 수 있도록 보조금 정산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산림휴양등산증진 사업은 산림휴양서비스활성화, 휴양림통합예약 시스템 유지관리, 국립산악박물관 유물구입, 산림레포츠센터 조성, 등산학교 조성, 숲길 안전관리, 숲길이용자쉼터 조성·운영, 동서트레일 조성, 국립울진동서트레일센터 건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액 257억 4,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및 이·전용 등을 고려한 예산현액 236억 2,200만원 중 181억 3,200만원을 집행하고 44억 3,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0억 5,800만원을 불용하였음.²⁶⁾

26)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산림휴양등산증진(1743-301)

【 2025년도 산림휴양등산증진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산림휴양등산증진	25,748	5,469	522 △8,117	23,622	18,132	4,432	1,058	20,496
공립산림휴양센터 조성	481	-	-	481	-	-	-	100

(나)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국립밀양산림레포츠센터 조성’은 5년간 총 사업비 250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투입하여 남부권 산림레포츠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추진됨.

【 국립밀양산림레포츠센터 조성사업 개요 】

- | |
|---|
| ○ 사업목적 : 남부권 산림레포츠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전문기관 설립 |
| ○ 사업비 : 250억원(국비 50%, 지방비 50%) / '24~'28(5년간) |
| ○ 대상지 :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삼양리 산1-1번지 일원 |
| ○ 사업내용 : 산림레포츠 센터, 실내 교육장, 야외(다목적) 교육장 등 |

※ 자료 : 산림청

사업 첫해인 2024년도 예산액은 기본계획(건축기획·타당성 조사)으로 국비 1억 8,500만원(자치단체자본보조)이 편성되었으며, 산림청은 사업시행자인 경남 밀양시에 전액을 교부하였으나 미집행되어 전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2025년도에도 실시설계비로 편성된 4억 8,100만원을 다시 전액 교부하였으나, 전년도 이월액과 당해 교부액 모두 불용되었음.

【 공립밀양산림레포츠센터 조성 사업의 연도별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	산림청		사업수행주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집행액 (B)	불용액	다음연도 이월액	실집행률 (B/A)
2024	185	185	185	-	185	-	-	185	0.0
2025	481	481	481	185	666	-	666	-	0.0
2026	100	-	-	-	-	-	-	-	-

※ 자료 : 산림청

□ 산림청은 집행부진 사유로 2024년 지자체의 공립밀양산림레포츠센터 지방비 확보 과정에서 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검토가 요구되었고, 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으로 지방의회에서 예산이 미편성되어 사업추진이 부진하였던 것으로 설명함.²⁷⁾

동 내역사업은 이후 2026년 3월에 경남 밀양시에서 사업을 포기하여 종료되었고, 현재 2024년과 2025년 교부된 국고보조금은 전액 환수(정산)를 위해 조치 중인 것으로 파악됨.²⁸⁾

□ 공립밀양산림레포츠센터 조성 사업의 연도별 국고보조금 교부내역을 살펴보면, 2024년의 경우 산림청은 2월 15일에 예산액 전액(1억 8,500만원)을 한 차례 교부하였고, 2025년에는 9월 24일과 10월 22일 2차례에 걸쳐 2억 4,000만원과 2억 4,100만원을 각각 지자체에 교부하였음.

27) 시설비(지방) 투입 및 연간 관리·운영비 부담으로 지방의회에서 예산이 미편성됨.

28) 산림청은 경상남도(밀양시)에 국고보조금 정산 확정 알림 공문을 송부(2026.5.7.)함.

【 국고보조금 교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액	교부액	교부일자	비고
2024	185	185	2024.2.15.	
2025	481	240	2025.9.24.	1차
		241	2025.10.22.	2차

주) 사업수행자(밀양시)의 사업포기에 따라 2026년 예산(공사비 1억원)은 미교부됨.

※ 자료 : 산림청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보조금 교부방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⁹⁾

그러나 산림청은 2024년도 사업비를 한 차례(2.15)에 전액 교부하였고, 2025년에는 지방비 미확보로 2024년도 이월액(기본계획)과 당해연도 사업비(실시설계)가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9월 24일 한차례 교부 후 한 달 만인 10월 22일에 2차(최종) 교부를 시행함.

29)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장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산림청은 2025년 2차례 국고보조금 교부 당시, 경상남도 밀양시에 보내는 공문에서 “지방비 미확보 등 교부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반환 조치할 계획이니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을 적시하였으나,³⁰⁾

지방비 미확보로 인한 전액 미집행에도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6년에 밀양시의 사업 포기 결정 후 보조금 환수(정산) 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임.

□ 또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³¹⁾

그러나 산림청은 2024년도 국비 보조금이 전액 이월되고 지방

30) “2025년 남부권 공립산림레포츠센터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알림”(숲길등산레포츠팀-2816, '25.9.24) 및 “2025년 산림휴양등산증진 국고보조금 교부 요청(2차)”(숲길등산레포츠팀-3024, '25.10.22)

31)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비가 미확보된 상황에서 2025년 보조금의 교부 여부 결정 시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보조금 전액을 교부하여 이월액과 당해 교부액이 모두 미집행되었고,

그 결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집행으로 국가재원 배분 및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초래함.

- 따라서 산림청은 공립밀양산림레포츠센터 조성 사업의 국고보조금 교부 여부 결정 시 보조사업 계획의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나 분할교부 등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교부방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교부 및 관리함으로써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였으므로,

향후 산림레포츠센터 조성 사업 추진 시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공립밀양산림레포츠센터 조성에 교부된 2024년 및 2025년 국고보조금 전액(이자 포함)이 조속히 환수될 수 있도록 보조금 정산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6) 산림교육치유허성화 : (치윌의 숲 조성) 건설보상비 과다편성
주의 및 구체적 실소요 예산 검토 선행 필요

- 산림청은 울산 및 대구 치윌의 숲 조성 사업의 2025년도 건설보상비(토지 매입) 예산을 구체적 소요에 대한 사전 검토와 계획 없이 과다편성하여 예산의 77.5%가 이월·이월·불용처리되었으므로 재정 운용에 주의하고, 향후 치윌의 숲 조성 사업 추진 시 실질적인 소요 예산에 대한 사전 검토와 면밀한 계획 수립을 선행함으로써 예산의 과다편성을 방지하고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산림교육치윌허성화 사업은 산림교육강화, 산림치윌허성화, 수목 장림 허성화, 산림휴양복지증진 지원, 산림복지통합플랫폼, 산림자원 활용기반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액 128억 1,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및 이·전용 등을 고려한 예산현액 99억 9,400만원 중 88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8,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7억 300만원을 불용하였음.³²⁾

32)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산림교육치윌허성화(1743-302)

【 2025년도 산림교육치유허성화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산림교육치유허성화	12,813	121	△2,940	9,994	8,808	483	703	12,531
-산림치유허성화	5,879	121	△2,890	3,110	2,002	483	625	8,597
·치유허의 숲 조성	5,305	121	△2,890	2,536	1,428	483	625	7,323

(나) 검토의견

□ 내내역사업인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은 국립 치유의 숲 조성 및 운영을 통해 산림치유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은 울산 및 대구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한 건설보상비 50억원과 울산 치유의 숲 조성(2년차) 실시설계비 3억 500만원을 편성하여 28억 9,000만원을 이용 감하고, 14억 2,800만원을 집행 하였으며, 4억 8,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6억 2,5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5년도 치유의 숲 조성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 치유의 숲 조성	5,305	121	△2,890	2,536	1,428	483	625	7,323
-건설보상비(410-00)	5,000	-	△2,890	2,110	1,127	393	590	3,600
-기본조사설계비(420-01)	-	121	-	121	88	-	33	400
-실시설계비(420-02)	305	-	-	305	213	90	2	405
-공사비(420-03)	-	-	-	-	-	-	-	2,918

□ 울산 및 대구 치유의 숲 조성은 각각 총 사업비 125억원(조성비 75억원, 토지매입비 5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울산은 2024년~2027년(4년간)까지, 대구는 2024년~2028년(5년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 울산 및 대구 치유의 숲 조성 사업 개요 】

<울산 치유의 숲 조성>

- 대 상 지 : 울산시 남구 선암동 산7-11번지 외 5필지 / 5.1ha
- 조성방향 : 도심 생활권 내 치유의 숲 조성으로 일상의 산림치유 제공
- 사업규모 : 125억원(조성비 75억원, 토지매입비 50억원)
- 사업기간 : '24년~'27년(4년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12,500	2,800	2,805	2,918	3,977
건설보상비	5,000	2,500	2,500		
기본계획	300	300			
실시설계	305		305		
공사비	6,895			2,918	3,977

<대구 치유의 숲 조성>

- 대 상 지 : 대구시 달서구 대곡동 산68-1번지 외 1필지 / 5.6ha
- 조성방향 : 도심 생활권 내 치유의 숲 조성으로 일상의 산림치유 제공
- 사업규모 : 125억원(조성비 75억원, 토지매입비 50억원)
- 사업기간 : '24년~'28년(5년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12,500	300	2,500	2,405	3,900	3,395
건설보상비	5,000		2,500	2,100	400	
기본계획	300	300				
실시설계	305			305		
공사비	6,895				3,500	3,395

※ 자료 : 산림청

동 사업은 총사업비 중 조성 예정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100억원이 반영되었으나, 2025년 편성된 건설보상비 50억원 중 28억 9,000만원 (57.8%)이 산림재해대책비로 이용되었고, 3억 9,300만원이 이월 되었으며, 5억 9,000만원이 불용되어 전체 건설보상비 예산의 22.5%만 집행됨.

이처럼 건설보상비 미집행 규모가 큰 사유에 대해 산림청은 울산의 경우, 당초 울산시에서 제안한 부지의 토지매입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나,

예산 반영 규모를 초과(약 120억원 소요 추정)해 울산시와 협의(국유지 포함하고, 주변 토지 매수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조성 예정지를 변경하고, 2024년에 치유의 숲 예정지(국유림 2필지, 사유토지 4필지) 중 사유지 4필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완료(21억원 소요)하였으며,

2025년에 치유의 숲 진입로 확장에 필요한 2필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무주부동산으로 확인('25.4월)되어 토지보상 공고('25.12월)하였으며, 2026년 토지 취득을 위해 토지매입 예산 4억원을 이월하였고,³³⁾

이로 인해 발생한 2025년 토지매입비 집행 잔액 중 16억원은 산림재해대책비로 이용('25.9월)하여 집중호우(7.16.~7.20.) 산림 피해 복구비 부족 재원으로 활용하였다는 설명임.

33) 2026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26.6월) 후 토지 취득(공탁금 납부)할 예정임.

【 울산 치유의 숲 조성 사업 변경계획 】

구분	당초계획	변경계획	
		연도	내용
토지매입	'24년 ~'25년	'24.1월	울산시에서 제안한 부지 합동검토 및 대안부지 제시 * 선암호수공원 중앙 희망 : 매입비 120억원 소요
		'24.2월	대상지 변경에 따른 현장확인 및 개인토지 매도의사 파악 * 6필지(국유림 2필지, 사유토지 4필지)
		'24.3월~5월	사유토지 매도 협의
		'24.6월	매도승낙한 사유토지(3필지) 감정평가 추진
		'24.8월	잔여 사유토지(1필지) 매수 협의 및 감정평가 추진
		'24.7월~10월	토지매입(4필지) 완료 - (매수일자) 7.31/8.19/9.25/10.14 * '24년 토지매입비(25억) 중 21억 집행
		'25.4월	진입로 부지(2필지) 추가매입을 위한 소유자 등 확인하였으나 무주부동산으로 확인
		'25.12월	진입로 부지(2필지) 취득을 위한 토지보상 공고 * 토지수용으로 취득하고자, '25년 토지매입비 (25억) 중 4억을 '26년으로 이월
		'26.6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예정(토지수용으로 취득)
		'26.7월	손실보상(공탁금 납부, 4억) 및 토지 취득 예정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24년	'24.11.~'25.4월	대상지 확정('24.8월) 이후 기본계획 수립 추진
실시설계	'25년	'25.8.~'26.10월	실시설계 추진 중
공사 1년차	'26년	'27년(계획)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계약 요청 예정
공사 2년차	'27년	'28년(계획)	공사 2년차 추진 및 준공 예정

※ 자료 : 산림청

대구의 경우, 2024년부터 지자체에서 제안한 부지를 검토하여 조성예정지를 확정하고, 2025년 토지매입을 완료(11억원 소요)하였으며, 토지매입비 집행 잔액 중 12억원은 마찬가지로 산림재해 대책비로 이용('25.9월)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산림피해 복구비 부족 채원으로 활용하였다는 설명임.

【 대구 치유의 숲 조성 사업 변경계획 】

구분	당초계획	변경계획	
		연도	내용
토지매입	'25년 ~'27년	'24.1월	대구시에서 제안한 부지(3필지) 합동검토
		'24.2월	대상지 현장확인 및 개인토지 매도의사 파악 * 3필지(개발제한구역 편입)
		'24.3월~9월	대상지 확정, 사유토지 매도협의 및 매도승낙서 징구
		'25.3월~6월	매도승낙한 사유토지(2필지) 사유림매수 예정지 조사
		'25.7월~8월	대상지 내 묘지이장 불가로 지적분할협의
		'25.5월~9월	토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추진
		'25.10월	토지매입(2필지) 완료 * '25년 토지매입비(25억원) 중 11억원 집행
		'26.12월 (예정)	치유의 숲 예정지 인근 산림 추가 매입 (토지소유자와 협의 중) 농지전용 및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납부(11억 예상) * 실시설계 및 인허가 완료 후 부담금 납부 예정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24년	'24.11.~'25.4월	대상지 확정('24.8월) 이후 기본계획 수립 추진
실시설계	'26년	'26.3.~'26.10월	'26년 3월 실시설계 계약체결(266백만원)하여 추진 중
공사 1년차	'27년	'27년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계약 요청 예정
공사 2년차	'28년	'28년	공사 2년차 추진 및 준공 예정

※ 자료 : 산림청

□ 울산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의 토지매입 추진 경과를 보면, 이미 전년도인 2024년 상반기에 대안부지가 제시(1월)되고 대상지 변경에 따른 현장확인 및 개인토지 매도의사 파악(2월)(6필지: 국유림 2필지, 사유토지 4필지)이 이루어져 사유토지 매도 협의(3월~5월)가 진행되었으며, 6월과 8월에 감정평가가 추진되어 7월~10월에 토지매입(4필지)이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음.

그럼에도 산림청은 2025년 건설보상비로 연차 사업 2년차 예산 25억원을 정확한 수요예측 없이 편성하여, 진입로 확장에 필요한 부지(2필지) 추가매입(손실보상 4억원 이월)만이 진행되고 집행잔액 16억원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 집행함.³⁴⁾

또한, 대구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의 토지매입도 전년도인 2024년 1월부터 대구시에서 제안한 부지(3필지)에 대한 합동검토가 이루어지고, 3월부터 대상지 확정 및 사유토지 매도 협의(매도 승낙 사유토지 2필지)가 진행되었으나,

산림청은 2025년 연차 사업 1년차 건설보상비 예산 25억원을 구체적 소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편성하여 11억원(토지매입 2필지)만 집행되고, 집행잔액인 12억원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 집행함.

이와 같이 치유의 숲 조성지 2곳 모두 2024년 초부터 대상지 확정 및 토지매입 절차가 진행되었고, 특히 울산의 경우 주요 대상지의 토지매입이 2024년에 완료되었음에도,

34) 산림청에 따르면, 울산 치유의 숲 예산은 4년 동안 연차 사업으로 총 125억원이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 중 '25년 건설보상비는 2년차, 25억원이 편성되어, 치유의 숲 예정지 주변 및 게재된 사유 토지 등을 추가 매입하여 치유의 숲을 확대하고자 토지 소유자와 협의(6필지)하였으나, 그 중 4필지는 토지소유자가 매도를 희망하지 않아, 추가 매입하지 못하였으며, 무주부동산으로 확인된 2필지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26.6월) 절차를 거쳐 취득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나, 이는 2025년도 건설보상비 편성 시, 당초 연차 사업 예산에 대한 구체적 소요의 검토나 면밀한 사전 계획 없이 사업이 추진되었음을 의미함.

2025년 토지매입 예산을 과다편성하여 건설보상비 예산의 77.5%가 이용·이월·불용처리됨.

비록 울산 및 대구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이 당초 대상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도시 지역임을 감안해 토지매입비가 높을 것을 추정하여 개략적인 금액으로 건설보상비 연차 예산이 편성되었더라도,

2024년 초 대상지가 확정되고 토지매입 절차가 진행된 상황을 고려하면, 2025년 건설보상비 예산 편성 시에는 실질적인 소요 예산에 대한 사전 검토와 정밀한 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예산의 과다편성을 방지하여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산림청은 울산 및 대구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의 2025년도 건설보상비(토지매입) 예산을 구체적 소요에 대한 사전 검토와 계획 없이 과다편성하여 예산의 77.5%가 이용·이월·불용처리되었으므로 재정 운용에 주의하고,

향후 치유의 숲 조성 사업 추진 시 실질적인 소요 예산에 대한 사전 검토와 면밀한 계획 수립을 선행함으로써 예산의 과다편성을 방지하고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할 필요가 있음.

7) 산불방지대책

- (고정익항공기 물탱크 도입) 산림청은 추경예산 편성 시 사업의 시급성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과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편성함으로써 예산 불용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과거 2년간 고정익항공기 물탱크가 도입되지 못하고 예산의 편성 및 불용이 반복된 만큼, 향후 사업 재추진 시 관계 기관 협의, 관련 시스템 및 장비의 도입·설치·운영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의 전제조건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관리에도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고성능 산불방지도론) 산림청은 추경 예산을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다른 용도로 집행하는 것은 국회의 추경예산 심의·의결 취지에 반해 사업목적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추경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전 검토와 계획 수립을 강화하여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집행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업의 추경 편성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산불방지대책 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 및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액 1,014억 9,900만원(본예산 578억 6,900만원, 추경증액 436억 3,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및 이·전용 등을 고려한 예산
 현액 964억 6,700만원 중 861억 6,300만원을 집행하고 103억 400만원을
 불용하였음³⁵⁾.

【 2025년도 산불방지대책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산불방지대책		57,869	101,499	729	913 △6,674	96,467	86,163	-	10,304	85,377

35)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산불방지대책(2332-300)

(나) 검토의견

(1) (고정익항공기 물탱크 도입) 추경 사업의 사전검토 미흡으로
인한 예산 편성과 전액 불용 반복

□ 내역사업인 ‘고정익항공기 물탱크 도입’은 고정익항공기 물탱크 도입을 통해 공중진화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경으로 80억원을 편성(본예산 미편성)하였으나, 전액 미집행되어 불용하였음.

【 2025년도 고정익항공기 물탱크 도입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고정익항공기 물탱크 도입 (자산취득비)	-	8,000	-	-	8,000	-	-	8,000	-

□ 동 내역사업은 당초 동해안 초대형 산불('22.3월), 강릉 산불('23.4월) 등을 계기로 강풍, 연무와 같은 악조건에서도 투입 가능한 고정익항공기의 활용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동해안 산불 예방대책(국무총리 주관)’에서 군 수송기(C-130)에 물탱크를 장착하여 악천후 산불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이 반영

(’23.5월)되어, 2024년도 고정익항공기 장착용 물탱크 도입 예산(80억원)을 확보해 한 차례 추진되었음.

당시 군 수송기 산불진화 활용과 관련해 국방부와 산림청 간 협의가 수차례 이루어졌으나, 국방부에서 군 작전 임무수행 제약, 비행안전 확보 등의 사유로 군 수송기 지원 불가를 산림청에 최종 통보(’24.8월)하면서 관련 예산이 전액 불용된 바 있음.

□ 이후 동 내역사업은 2025년 산림청장과 국방부 장관(당시 차관 직무대행)이 극한기상에서 대형산불 발생 시 「관·군 산불진화 협업」에 대한 지원에 합의(’25.4.21.)하고,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에 고정익항공기 물탱크 도입 예산(80억원)이 반영되어 재추진하였으나,³⁶⁾ 추진 과정에서 물탱크 제작사인 美UAC社로부터 군 수송기(C-130J) 기체 내부 전력패널 장착이 불가함을 통보(’25.11.13.)받아 다시 전액 재불용됨.

산림청에 따르면, 전력패널은 압축기에 전력을 공급하여 물 또는 지연제를 물탱크 충압공기와 혼합 분사하는데 필요한 장비로, 공군 수송기(C-130J) 화물칸에 장착되는 물탱크(MAFFS) 시스템³⁷⁾

36) 산림청,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공군본부 등이 참여한 「관·군 산불진화 협업을 위한 회의」(6회) 및 공군 수송기(C-130J) 물탱크 장착 협의(’25.7.2.) 실시

37) 물탱크(MAFFS) 시스템은 당초 美 록히드마틴社 수송기인 C-130H/J의 산불진화 임무수행을 위해 제작되었으며, 공군 수송기(C-130J)에 별도의 수리/개조 없이 장착·운영이 가능하도록 전용 트레일러에 제작되어 항공기 내부에 장·탈착함.

운용을 위해서는 전력패널 장착이 필수적인 것으로 파악됨.

□ 산림청은 사전에 물탱크 장착이 불가능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물탱크 제작사 美UAC社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추진 과정에서 제작사로부터 기체 전력패널 장착이 불가능함을 통보받았다는 설명임.

□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단순한 외부 변수에 따른 사업 차질이라기보다는,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기술적 요건(전력패널 장착 가능 여부) 및 관계기관 협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특히 동 내역사업은 이미 2024년도에 한 차례 추진되었음에도, 핵심 기술요건에 대한 검증 없이 재차 사업을 추진한 점에서 사전 타당성 검토가 현저히 미흡하였던 것으로 평가됨.



더욱이 추가경정예산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외적 수단으로서, 사업의 집행 가능성과 추진 여건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동 내역사업은 기본적인 도입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 예산으로 편성·추진되었다는 점에서 그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됨.

또한, 동일 사업 예산이 2년간 반복적으로 편성되었음에도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전액 불용된 것은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산불 대응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정책목표 달성에도 차질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최근 대형·동시다발적 산불 발생 증가에 대응하여 공중진화 수단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핵심 사업이 준비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한 점은 정책 집행 측면에서도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음.

□ 한편, 산림청은 C-130J 항공기 제작사인 美록히드마틴社에 MAFFS 운용을 위한 전력패널 장착 여부 및 금액, 수리·개조 등을 요청('25.11.25.)한 상황으로,

록히드마틴社로부터 참여 여부에 대한 답변을 확보하여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임.

□ 따라서 산림청은 추경예산 편성 시 사업의 시급성뿐만 아니라 사업계획과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편성함으로써 예산 불용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과거 2년간 고정익항공기 물탱크가 도입되지 못하고 예산의 편성 및 불용이 반복된 만큼,

향후 사업 재추진 시 관계 기관 협의, 관련 시스템 및 장비의 도입·설치·운영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의 전제 조건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관리에도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2) (고성능 산불방지드론) 도입 가능성 검토 미흡에 따른 추경
사업 추진 무산 및 추경예산의 목적 외 사용 부적절

- 내역사업인 ‘고성능 산불방지드론’은 산불진화 및 산림재난 역량 강화를 위한 고성능 드론 구매 사업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25.5.1)으로 36억원을 편성(본예산 미편성)하여 27억원을 전용감한 예산현액 9억원 중 8억 7,300만원을 집행하고, 2,7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5년도 고성능 산불방지드론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고성능 산불 방지드론 (자산취득비)	-	3,600	-	△2,700	900	873	-	27	88

- 고성능 산불방지드론 사업은 장거리 운영 능력과 야간감시 기능 강화 카메라가 장착된 국산 고성능 산불방지드론(열화상 드론) 45대(대당 6,000만원)와 드론 전용 운반 차량 15대(대당 6,000만원)를 도입·배치하는 것으로 편성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산림청은, 열화상 드론(45대)과 드론 차량(15대)을 드론 3대와 차량 1대를 1세트로 해서 각 지방

산림청(총 10세트), 산림항공본부(3세트) 및 국립산림과학원(2세트)에 배치할 계획을 수립함.

【 2025년도 고성능 산불방지드론 사업 편성 및 배치계획 】

세사업 명	예산 편성근거	배치계획 (1세트 : 드론 3대, 차량 1대)
고성능 산불방지드론	- o 3,600백만원 - (열화상 드론) 45대×60백만원 =2,700백만원 - (드론 차량) 15대×60백만원 =900백만원	- o 각 지방산림청(북부, 동부, 남부, 서부, 중부) × 2세트 (총 10세트) - o 산림항공본부 × 3세트 - o 국립산림과학원 × 2세트

※ 자료 : 산림청(고성능 산불방지드론 사업 설명자료)

□ 그러나, 당초 국산 드론 도입 및 배치계획과 달리 고성능 산불방지드론은 2차에 걸친 입찰 참가 업체의 기술평가 기준 미달 및 외산(중국산) 드론만이 입찰에 참가하여 유찰됨에 따라 도입되지 못하였고,

【 고성능 산불방지드론 미도입 사유 】

구분	미도입 사유
1차 (’25.8월)	o 1차 개찰 후 입찰에 참가한 5개 업체 기술평가를 실시하였으나, 평가 결과 평가점수 미달로 유찰
2차 (’25.10월)	o 2차 개찰 시 입찰에 참가한 4개 업체의 제안서 검토 결과, 모두 외산(중국산) 드론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유찰

※ 자료 : 산림청

고성능 산불방지드론 미집행 잔액인 27억원은 산림헬기 도입·운영(군 헬기 물버킷 지원) 사업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고성능 산불방지드론과 세트로 각 지방산림청 등에 배치할 계획이었던 드론 차량은 고성능 산불방지드론 미도입에도 종전에 보유한 드론 운반용으로 15대를 구입함.

- 산림청이 요구하는 고성능 산불방지 기술과 성능을 충족한 국산 드론 도입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를 추경사업으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

산림청은 추경예산 편성 당시 국내 드론산업 발전과 국내업체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국내 드론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술검토를 하였으며, 입찰 제안요청서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드론 제작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견적서를 받아 추진하였다는 설명임.

또한, 고성능 산불방지드론의 미도입에도 함께 편성된 드론운용 차량 15대를 구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 발생 시 신속한 드론 운용과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 등 현장 기동성과 대응력 강화를 위해 드론 차량을 도입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이러한 산림청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의견과 견적서는 당시 기획재정부에서 소요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국산 드론 제작사로부터 받은 견적³⁸⁾과 입찰에 참가한 각 업체별 규격제안서로 이는 사업추진의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한 자료로는 보기 어려움.

【 고성능 산불방지드론 견적서 상세 내역 】

총 견적내역

구분	내역	금액
산불감지드론	EO/IR/LRF 통합형 임무카메라 장착 드론	60,000,000
총 계(부가가치세 제외)		60,000,000

항목	상세 내역	납품단가	수량	제안가
1. 비행기체	기체 무게 : 15kg 최대 이륙중량 : 25kg 비행시간 : 40분 최대고도 : 2,000 미터 펼쳤을때 크기 : 1540 * 1770 * 815mm 접었을때 크기 : 770 * 885 * 815mm 통신방식 : RF, LTE 내풍성 : 15m/s 이상 방수/방진 : IP54 충돌방지 센서 : 전방/측방	27,000,000	1	27,000,000
2. 임무카메라(EO/IR/LRF) / 중국산배제	광학카메라 : 8.51MP, 1/2.5" CMOS, 20x 광학 줌, 최대 240x 디지털 줌, 4K@30fps 열화상카메라 : 640×512 해상도, 30Hz, 방사형, 온도 범위: -20℃~150℃ / 0℃~550℃ 레이저거리측정기 : 최대 2400m (1Hz), 최대 1250m (10Hz), 정밀도: 0.1~0.5m AI 기능 : EO/IR 객체 추적, AI 기반 사람/차량 인식, 자동 줌	20,000,000	1	20,000,000
3. 지상통제장비(GCS)	화면 : 10 ~ 12인치, 밝기 400nit 이상, FULL HD 화질 지도 : 상용지도 탑재, 위도/경도, 군사용MGRS 표시, 영상정보, 데이터저장/재생, 촬영방향, 거리 표시 실시간 동영상 및 정지영상 획득 기능 지도 이용 임무계획 수립 가능 자동 경로비행 가능 충돌 방지 경고	8,000,000	1	8,000,000
4. 부수장비	충전기 : 40분 이내 충전 배터리 : 기본 2개 하드케이스 : 기체 및 모든 장비 통합 보관 가능 프로펠러 : 여분 1개 세트 공구 세트 : 운용자 수준 정비 가능 공구세트 1개	3,000,000	1	3,000,000
5. 운용자교육	2일(16시간)	2,000,000	1	2,000,000
6. 옵션	국정원 인증 암호모듈(KCMVP) 장착	4,000,000	1	
합 계				60,000,000

※ 자료 : 산림청

38) 국산 드론 제작사가 기획재정부에 견적서를 제출한 시점은 2025년 4월 17일로, 정부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제안일인 4월 21일 직전임.

게다가 해당 견적서의 상세 내역 또한 입찰 제안요청서의 요구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됨.

【 사전 제출 견적서와 입찰 제안요청서 사양 비교 】

구 분	사전 제출 견적서	입찰 제안요청서
최대비행시간	40분	60분
카메라 해상도	640px X 512px	1,280px X 1,240px
비행거리 (최대 신호 전송거리)	-	3km 이상
격자비행	-	지형추적비행으로 정사영상 촬영용 격자비행(100ha)

주) 산림청은 비행거리와 격자비행 사양의 경우 일반 열화상 드론 제안요청서에 적용 중인 기준을 동일하게 반영한 것으로 설명함.

※ 자료 : 산림청

입찰 제안요청서의 드론 세부 규격에는 최대 비행시간 60분 이상, 카메라 해상도 1,280px × 1,240px, 지형추적비행으로 격자비행 (100ha) 등의 사양을 요구(동등 또는 그 이상의 규격만 허용) 하고 있으나,

추경예산 편성 시 받은 사전 견적서에는 비행시간이 40분으로 카메라 해상도는 640px × 512px로 기재되어 있고, 격자비행 사양은 미기재되어 있음.

1차 조달청 입찰결과, 전체 입찰 참가 업체의 기술평가 기준 미달 항목에 ‘최대비행시간’과 ‘지형추적비행으로 격자비행’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면,

추경예산 편성 당시, 국산 드론 제작 기술 수준은 산림청이 도입하려는 고성능 산불방지드론의 요구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음.

【 고성능 산불방지드론 도입 제안요청서(드론 세부 규격) 】

□ 드론 세부 규격서	
품 명	고성능 산불방지 드론
용 도	산불재난 현장 실시간 영상촬영, 산불감시 등
규격 및 구성	1. 기체 1.1 최대 비행 고도 : 1,500m 이상(AGL 기준) 1.2 수평 최대 비행속도 : 15m/s 이상 (GPS모드) 1.3 수직하강 최대 비행속도 : 5m/s 이상 (GPS모드) 1.4 내풍 가능 최대 풍속 : 12 m/s 이상 1.5 최대 비행 시간 : 60분 이상 1.6 IP 등급 : IP 54 이상 1.7 작동 온도 : -20 ~ 50 ℃ 1.8 펼쳤을 때 대각선 축간거리 : 1.5m 이하 (가장 거리가 긴 모터축 기준) 1.9 접었을 때 크기 (케이스에 보관시 크기) : 가로,세로 1m이하, 높이 50cm이하 1.10 기체 무게(배터리, 페이로드 포함) : 15kg 이하 1.11 통신방식 : RF, LTE(4G 또는 5G) 동시 지원 1.12 충돌방지 센서 : 전후/측방 2. 조종기 2.1 화면 : 7인치 이상 터치 스크린 2.2 촬영 : 실시간 동영상 및 정지영상 촬영 기능 2.3 비행 : 자동 경로비행 가능(지형추적 비행 필수) ※ [별표 1] 제안서 평가 기준표의 기술능력평가 내용에 '지형추적 비행으로 격자비행(100ha)'이 포함되어 있음. 2.4 기능 : 충돌 방지 센서 기능 작동 시 표시 및 알림 기능 2.5 최대 전송거리(신호) : 3km 이상

- 2.6 무게 : 2kg 이하
- 2.7 거치대 : 접이식 삼각대를 이용하여 조종기를 눈높이에 맞게 거치
- 2.8 사용시간 : 3시간 이상 연속 사용 (내장+외장 배터리)
- 2.9 조종기 보관 및 이동이 편리한 케이스(기체 케이스에 포함 가능)

3. 스마트 배터리(기체 및 조종기)

- 3.1 배터리 자체 잔량 확인 및 자동방전 기능 적용

4. 배터리 충전 및 배터리 보관함

- 4.1 최대 사용 전력 : 2,000W 이하
- 4.2 충전 : 2개 이상 배터리 동시 충전 기능
- 4.3 배터리 보관 : 4개 이상의 기체 배터리를 수납
- 4.4 충전과 배터리 보관이 동시에 지원될 경우는 1SET로 인정
- 4.5 충전과 보관이 따로 지원될 경우는 각각 1SET씩 납품
- 4.6 충전기 보관은 배터리와 함께 보관하여야 함
- 4.7 보관함 크기 : 가로,세로 0.7m이하, 높이 0.5m이하

5. 열화상 카메라

5.1 해상도 : 1280×1024 @30fps

- 5.2 온도 측정 방법 : 스팟미터, 구역 측정, 중심점 온도 측정
- 5.3 온도알림 지원 기능
- 5.4 광학카메라 : FHD급 이상 해상도, 20x 광학 줌 이상
- 5.5 레이저 거리측정기 : 최소 2km 이상 측정
- 5.6 객체 인식 : EO/IR 사람/차량 자동 인식
- 5.7 특정 온도범위 설정 후 원하는 색상으로 변환
- 5.8 카메라 보관 및 이동이 편리한 전용 케이스

6. 현장 데이터 분석용 노트북

- 6.1 화면 : 40.6cm(16인치)
- 6.2 해상도 : 2560*1600(WQXGA) 이상
- 6.3 무게 : 2kg 이하
- 6.4 운영체제 : 윈도우11홈
- 6.5 밝기 : 500nit
- 6.6 주사율 : 240Hz

	6.7 CPU : 인텔 코어 울트라9 285H(5.4GHz) 16코어 이상 6.8 그래픽 : 외장그래픽 엔비디아 RTX5080, VRAM:16GB, TGP:120W 이상 6.9 램 : 64GB 이상 6.10 용량 : 4TB 이상 6.11 배터리 : 90Wh 7. 드론 영상 관제 시스템 7.1 드론 영상 관제 프로그램 주요 기능 7.2 16개 이상 영상을 수신하여 동시 표출 가능 7.3 Pixhawk, DJI, Autel Robotics 등의 드론 동시 관제 가능 7.4 비행경로 설정/저장/불러오기, 이/착륙 제어, 비상복귀 등 기능 제공 7.5 수신 중인 최대 16개의 실시간 영상에서 객체구분, 화재감시, 중장비 인식의 자동 감지 기능 구동 7.6 KCMVP 구간암호화 통신 지원 7.7 드론에 탑재된 카메라가 촬영중인 영상을 영상수신서버로 실시간 송출 7.8 화상/실화상 카메라 선택 및 Pan-Tilt Zoom 등의 기능 제공
※ 동등 또는 그 이상의 규격만 허용	

※ 자료 : 산림청

□ 국내 드론산업 발전과 국내업체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국산 고성능 산불방지드론을 도입하고자 추진한 산림청의 사업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그러나, 산림청이 제시한 요구 성능을 충족할 수 있는 국내 제작업체의 존재 여부 및 기술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애초에 계약 체결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사업이 계획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특히, 동 내역사업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으로서 긴급하고 불가피한 소요를 전제로 편성되어야 하고 집행 가능성이 충분히 담보되는 사업에 한하여 추진되어야 하나,³⁹⁾

추경 편성의 전제가 된 도입 가능성에 대한 부실한 사전검토와 미흡한 사업계획으로 추경사업을 편성하여 고성능 드론 도입이라는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음.

더욱이 추경예산을 본사업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한 채 전용하여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것은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의결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예산 통제 원칙 측면에서 부적절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산림청은 추경 예산을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다른 용도로 집행하는 것은 국회의 추경예산 심의·의결 취지에 반해 사업목적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39)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따라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목적적합성, 예측불가능성, 보충성, 시급성, 연내집행가능성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일반요건】

구분	요건	세부내용
1	목적적합성	추경예산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해소할 수 있을 것
2	예측불가능성	추경예산안 편성사유가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일 것
3	보충성	예비비를 포함한 본예산 등 다른 수단으로 상황극복이 곤란할 것
4	시급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을 것
5	연내집행가능성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경예산안을 구성할 것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 p47)

또한, 추경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전검토와 계획 수립을 강화하여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집행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업의 추경 편성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8) 산림헬기 도입·운영 : (산림헬기 도입·교체) 연내 집행가능성
및 계약 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인 연부율 설정

- 산림청은 국가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림헬기 도입·교체 사업 추진 시 추경 등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연내 집행 가능성 및 계약 과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자산취득비 연부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산림헬기 도입·운영 사업은 산불,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 대응을 위하여 산림헬기를 도입 및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액 2,134억 4,800만원(본예산 938억 5,800만원, 추경증액 1,195억 9,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및 이·전용 등을 고려한 예산 현액 2,246억 1,600만원 중 1,586억 1,400만원을 집행하고 655억 8,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1,900만원을 불용하였음.⁴⁰⁾

【 2025년도 산림헬기 도입·운영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산불헬기 도입·운영	93,858	213,448	5,407	14,738 △8,977	224,616	158,614	65,583	419	193,826
-산림헬기 도입·교체	52,500	149,300	4,502	△654	153,148	87,802	65,346	-	158,400

40)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산림헬기 도입·운영(2333-300)

(나)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산림 헬기 도입·교체’는 산불 조기진화 및 산림 병해충 방제 등 효율적인 산림자원보호와 산림재난방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 헬기를 도입하는 사업임.

당초 2025년도 본예산에는 대형헬기 3대(1년차, 2년차, 3년차 각 1대) 및 중형헬기 2대(1년차, 2년차 각 1대) 도입을 위하여 52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25.5.1)으로 대형헬기(1년차) 3대, 중형헬기(1년차) 3대 추가 도입 및 본예산에 편성된 대형헬기 1대와 중형헬기 1대의 1년차 연부율 상향분(10%→30%) 20%p를 반영하기 위한 예산액 968억원을 추가한 1,49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833억원(전년도 이월액 45억 200만원 제외)을 집행하고, 대형(1년차) 4대(본예산 1대, 추경 3대)분 도입 예산 중 6억 5,400만원을 타 사업으로 전용하였으며, 653억 4,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2025년도 산림헬기 도입·교체 사업 예산 및 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편성 근거	집행액	전용	이월액
합 계		149,300		83,300	△654	65,346
본예산	대형(3년차)	7,700	1대×55,000백만원×14%	7,700	*‘부품구매’ 내역 사업 으로 전용 (사유: KA -32 헬기 부품 구매)	
	대형(2년차)	22,000	1대×55,000백만원×40%	22,000		
	중형(2년차)	14,000	1대×25,000백만원×40% +단가상승분	14,000		
본예산 + 추경	대형(1년차)	5,500	1대×55,000백만원×30%	-		이월
		11,000 (추경)	*추경: 연부율 상향분(10%→30%) 20% 추가반영			
	중형(1년차)	3,300	1대×33,000백만원×30%	9,900		
		6,600 (추경)	*추경: 연부율 상향분(10%→30%) 20% 추가반영			
추경	대형(1년차)	49,500	3대×55,000백만원×30%	-		이월
	중형(1년차)	29,700	3대×33,000백만원×30%	29,700		

주) 집행액 중 대형(1대) 부가세 4,502백만원(전년도 이월액) 집행은 제외

※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5년 기준 대형 및 중형 산림헬기 도입 시 자산취득비 연부율은 당초 1차년도 10%, 2차년도 40%, 3차년도 50%로 추진되었으나, 추경 편성으로 1년차 대형 4대(본예산 1대, 추경 3대) 및 중형 4(본예산 1대, 추경 3대)의 연부율은 1차년도 30%, 2차년도 30%, 3차년도 40%로 변경되었음.

【 연도별 산림헬기 도입시 자산취득비 연부율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당초	변경
대형 산림헬기	1:4:5	3:4:3	1:4:5	1:4:5	3:3:4
중형 산림헬기	1:4:5	-	1:4:5	1:4:5	3:3:4

※ 자료: 산림청

□ 산림헬기 도입은 통상 1차년도의 계약 체결에 6개월~1년이 걸리고 이후 납품까지 3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 산림헬기 도입·교체 사업 추진 일정 】

연차	구분	내용
1차년도	1월	예산배정 및 항공기 도입사업 TF 구성
	2월	입찰 제안요청서 작성 및 주요장비도입심의위원회 개최(자체계약 시 일상감사 요청)
	3월	사전 규격공고(5일) 및 규격서 재검토(필요시) * 업체의 규격 수정요청사항 있을 시 규격공고 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4월	입찰공고(40일)
	5월	제안서 기술 및 가격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후 낙찰자 선정(협상기간 15일)
	6월	계약체결(계약후 납품까지 만 3년 소요) 및 신용장 개설
2차·3차년도	3·9월	중간공정 검사
4차년도 (이월 시)	5~6월	최종 인수검사
	6월	수입부가세 지급

※ 자료: 산림청

2020년 이후 계약된 대형 산림헬기 4대(S-64E 1대, M234 1대, M234SP 2대)에 대한 계약 현황을 보면, 실제 계약은 모두 12월에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음.⁴¹⁾

【 2020년도 이후 도입된 대형 산림헬기 계약 현황 】

구 분	A	B	C	D
기종	S-64E	M234	M234SP	M234SP
계약대수	1대	1대	1대	1대
계약일	'19.12.12.	'22.12.16.	'24.12.19.	'24.12.19.
계약기간	3년	3년	2년*	3년
납품일	'22. 12. 3.	'25. 12. 28.	'26.11.30.	'27.12.24.

※ 주: 납품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 실제 계약기간과 납품일 기준으로 작성, 납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과 납품일을 기준으로 작성
 ※ 주: 산림헬기C의 경우 기존 제조사와 계약취소 후 다른 제조사에서 既 제작 중인 대형헬기를 계약 체결하게 되면서 최종 계약의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된 것임
 ※ 자료: 산림청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25.5.1)으로 도입되는 대형 산림헬기 (3대)의 경우 연초가 아닌 5월부터 신규도입 절차가 추진되어, 최소 12월에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불가피한 경우 1차년도 예산의 이월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41) ‘산림헬기 도입·교체 사업 추진 일정’ 및 ‘2020년 이후 도입된 대형 산림헬기 계약 현황’ 등은 우리 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산림청 소관)’(2025.8월, p53, 54) 자료를 인용함.
 * 내자구매인 중형(수리온, 3대)의 경우에도 계약일은 '22년 11월 18일과 '24년 12월 23일로 연말에 계약이 이루어짐.

당초 1차년도에 10%로 반영된 연부율을 추경에서 계약 시점에 대한 고려 없이 예년보다 비합리적으로 높게 30%로 변경(1:4:5→3:3:4)하여 도입을 추진함.

이는 결국 추경 이후 2025년도 대형헬기 도입의 계약체결 지연으로 1년차 대형 4대[추경 3대, 본예산 1대(추경 연부율 증액 20%)]가 모두 연내 집행되지 못하고 예산 653억 4,600만원(추경 반영 증액분 968억원의 67.5%)이 이월되는 결과로 나타남.

【 2025년도 대형헬기 도입사업 추진 일정 】

월별	대형헬기 도입사업 추진 일정	
	본예산(1대)	추경예산(3대)
'25.1월	예산배정, 항공기 도입사업 TF 구성 및 입찰제안요청서 작성	-
'25.2월	주요장비도입 심의위원회 개최 및 산림청 일상감사 의뢰	-
'25.3월~4월	자체 사전규격 공개 및 의견 수렴	-
'25.5월	단일 응찰에 따른 수의계약 진행	주요장비도입 심의위원회 개최 및 산림청 일상감사 의뢰
	제안서 기술 및 가격평가 실시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자체 사전규격 공개 및 의견수렴
'25.6월~7월	-	단일 응찰에 따른 수의계약 진행
		제안서 기술 및 가격평가 실시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5.8월~10월	- 기술협상 및 가격수의시담 - 국외 시가조사 의뢰(외교부) 및 가격협상 완료 ('25.10.30.)	
'25.12월	원활한 계약이행 및 헬기운영 유지보수 지원 등의 위해 美콜럼비아사의 국내파트너(헬리코코리아) 선정으로 양자 간 MRO 지정 협의 최종단계에서 계약 연기	
'26.1월	공동계약자 기존 제안서 협상안 동의 및 계약체결('26.1.29.)	

※ 자료: 산림청

□ 따라서 산림청은 국가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림헬기 도입·교체 사업 추진 시 추경 등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연내 집행가능성 및 계약 과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자산취득비 연부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가. 개 요

1) 세입결산

- ☐ 2025년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추경증액분 1,181억 4,400만원을 포함하여 전입금 7,869억 6,700만원, 경상이전수입 2,455억 3,200만원 등 1조 937억 4,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실제 징수결정액은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증가 등으로 예산 대비 231억 2,300만원이 증가한 1조 1,168억 6,300만원이 되었음.
- ☐ 징수결정액 1조 1,168억 6,300만원 중 일반회계 전입금 7,869억 6,700만원, 법정부담금 등 경상이전수입이 1,898억 5,400만원, 용자 및 전대차관원금회수 336억 9,800만원 등으로 총 1조 379억 600만원을 수납하였음.
- ☐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 789억 5,700만원의 주요 원인은 납기미도래가 399억 7,000만원, 체납자 채력부족 및 거소불명이 128억 9,000만원, 관계기관 예산부족이 67억 9,400만원, 징수유예 등이 193억 300만원임.

【 2025년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과 목	예산액		정 수 결정액 (B)	수납액 (C)	불 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증 감	
	본예산	추경(A)					E=C-A	E/A
합 계	975,596	1,093,740	1,116,863	1,037,906	-	78,957	△55,834	△5.1
○ 재 산 수 입	1,172	1,172	2,365	1,855	-	510	683	58.3
- 관유물대여료	505	505	419	419	-	-	△86	△17.0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667	667	1,946	1,436	-	510	769	115.3
○ 경상이전수입	245,532	245,532	267,028	189,854	-	77,174	△55,678	△22.7
-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12	12	6	6	-	-	△6	△50.0
- 변상금및위약금	134	134	292	254	-	38	120	△89.6
- 가 산 금	2	2	1	1	-	-	△1	△50.0
- 기타경상이전수입	245,384	245,384	266,729	189,593	-	77,136	△55,791	△22.7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200	200	765	753	-	122	553	276.5
- 잡 수 입	200	200	765	753	-	122	553	276.5
○ 관유물매각대	25,719	25,719	17,506	16,245	-	1,261	△9,474	△36.8
- 고정자산매각대	12	12	11	11	-	-	△1	△8.3
-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25,707	25,707	17,495	16,234	-	1,261	△9,473	△36.8
○ 융자 및 전대차입금회수	34,137	34,137	33,698	33,698	-	-	△439	△1.3
- 융자원금회수	34,137	34,137	33,698	33,698	-	-	△439	△1.3
○ 전년도이월금	-	-	-	-	-	-	-	-
- 전년도이월금	-	-	-	-	-	-	-	-
○ 세계잉여금	13	13	8,533	8,533	-	-	8,520	65,538.5
- 세계잉여금이입액	13	13	8,533	8,533	-	-	8,520	65,538.5
○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668,823	786,967	786,967	786,967	-	-	-	-
- 전 입 금	668,823	786,967	786,967	786,967	-	-	-	-

※ 자료: 산림청

2) 세출결산

- 2025년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예산액은 당초 9,755억 9,600만원이었으나 추경증액분 1,181억 4,400만원, 전년도 이월액 466억 9,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1조 1,404억 3,200만원으로 증가함.
- 예산현액 중 숲가꾸기 등 산림자원 및 산업육성에 5,154억 7,400만원,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관리에 1,329억 9,000만원, 임산물수출촉진 등 국제산림협력 63억 1,400만원 등에 90.8%인 1조 352억 9,500만원이 지출되었음.
- 다음연도 이월액 256억 1,800만원은 산림자원 및 산업육성 177억 9,500만원, 산림재난관리 52억 7,900만원 등이며, 불용액 795억 2,000만원은 각 비목별 집행잔액 등임.

【 2025년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 이용				
[합 계]	975,596	118,144	46,692	-	1,949 △1,949	1,140,432	1,035,295	25,618	79,520
○ 국제산림협력 (1300프로그램)	7,003	-	1,096	-	△50	8,049	6,314	866	869
- 임산물수출촉진	7,003	-	1,096	-	△50	8,049	6,314	866	869
○ 산림자원 및 산업육성 (1500프로그램)	518,945	17,319	42,128	-	1,949 △1,899	578,442	515,474	17,795	45,173
- 산림자원 육성·관리	346,931	1,000	16,025	-	△1,261	362,695	315,735	9,092	37,869
- 목재 및 임산물 활용	80,488	16,319	2,146	-	-	98,953	90,339	4,021	4,593
- 임업정책자금 지원	73,149	-	20,810	-	1,949	95,908	93,976	1,014	918
- 산림경영 경쟁력 강화	14,024	-	3,147	-	△638	16,533	11,071	3,668	1,793
- 임업기술연구개발	4,353	-	-	-	-	4,353	4,353	-	-
○ 산림재난관리 (2300프로그램)	139,998	-	2,838	-	-	142,836	132,990	5,279	4,567
- 산림병해충 예방 및 대응	139,998	-	2,838	-	-	142,836	132,990	5,279	4,567
○ 산림행정지원 (7000프로그램)	5,702	-	630	-	-	6,332	4,644	1,678	11
- 임업통계조사	5,702	-	630	-	-	6,332	4,644	1,678	11
○ 회계간거래 (8000프로그램)	303,948	100,825	-	-	-	404,773	375,873	-	28,900
- 회계간 전출	303,948	100,825	-	-	-	404,773	375,873	-	28,900

※ 자료: 산림청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 (이행점검 및 사업관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 연례적 전액 불용 및 제도개선 미비

- 산림청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이행점검 강화를 위한 현장점검과 간담회 등 의견수렴 및 임업인 대상 교육·홍보 등 예방활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안내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정수급 신고의 접근성과 인지도를 제고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은 임업·산림의 공익가치 제고와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임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임야에서 임산물 생산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액 575억 8,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을 고려한 예산
현액 771억 2,600만원 중 765억 1,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700만원을 불용하였음.⁴²⁾

42)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1538-306)

【 2025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57,580	19,546	5 △5	77,126	76,515	103	507	59,146
-이행점검 및 사업관리	4,649	-	-	4,649	4,142	-	507	4,713

(나)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이행점검 및 사업관리’ 사업은 산림청·지자체에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적격여부 및 의무준수 사항 이행여부 현장점검, 임업인 대상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동 내역사업의 포상금(310-03)은 2025년도 예산액 1,0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음.

【 2025년도 이행점검 및 사업관리 사업 포상금(310-03)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포상금(310-03)	10	-	-	10	-	-	10	10

※ 자료 : 산림청

-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신고 포상금은 “위법행위 방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국민의 신고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포상금·상금 등의 형식으로 지급하는 경비로서 반드시 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하고 있고,

이행점검 및 사업관리 사업의 포상금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포상금의 지급 등) 및 시행규칙 제25조,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

정보 공개 및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산림청 고시)에 근거하여,⁴³⁾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공익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하거나 수령한 부정행위를 주무관청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동 법률의 포상금 지급 제도는 2022년 법률(시행 2022.10.1.,
2021.11.30. 제정) 시행 당시부터 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포상금
예산은 2022년부터 매년 1,000만원이 편성되어오고 있음.

□ 그러나, 관련 법령에 근거한 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이행점검
및 사업관리 사업의 포상금은 2022년 제도 시행 이후 집행사례가
없는 실정임.

43)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포상금의 지급 등)

① 산림청장은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공익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하
거나 수령한 부정행위를 주무관청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목적 달성 및 투명성 제고에 모범적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개인, 기업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대상 및 방법,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
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25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
신청 또는 수령 관련 부정행위를 주무관청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법 제22조 및 영
제30조에 따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따른 미지급 금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1. 같은 부정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2. 신고한 자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3. 신고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해 사전에 공개된 것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
하거나 조사·수사 중인 경우
 4. 그 밖에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거나 객관적 증거 없이 신고한 경우 등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2022년 이후 포상금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2022	10	-	10
2023	10	-	10
2024	10	-	10
2025	10	-	10

※ 자료 : 산림청

□ 산림청은 2022년 제도 시행 이후 부정수급 신고 건이 없어 편성 예산이 미집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농업분야 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는 2025년 기준 361건이 접수되고 있는 것과 대비됨을 알 수 있음.

【 농업분야 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 및 조사·단속 현황 】

구분		신고 접수 (명)	조사실적		조사완료		적발실적		조치결과	
			조사 횟수 (회)	조사 인원 (명)	농업인 (명)	필지 (개)	농업인 (명)	필지 (개)	고발 및 행정처분 요청(건)	행정처분 요청(건)
'21년	신고	195	362	752	195	540	133	336	122	11
	자체합동	-	433	776	1,881	3,843	690	1,350	88	602
	소계	195	795	1,528	2,076	4,383	823	1,686	210	613
'22년	신고	368	385	806	368	775	212	477	148	64
	자체합동	-	525	1,099	2,090	4,174	362	654	77	285
	소계	368	910	1,905	2,458	4,949	574	1,131	225	349
'23년	신고	268	334	759	268	900	185	439	156	29
	자체합동	-	1,098	2,055	3,717	8,069	982	2,408	90	892
	소계	268	1,432	2,814	3,985	8,969	1,167	2,847	246	921

'24년	신고	300	409	893	300	788	193	502	149	44
	자체합동	-	1,495	2,743	3,669	11,511	672	2,002	46	626
	소계	300	1,904	3,636	3,969	12,299	865	2,504	195	670
'25년	신고	361	637	1,067	361	1,109	211	625	177	34
	자체합동	-	1,763	2,911	4,385	11,533	606	1,451	29	577
	소계	361	2,400	3,978	4,746	12,642	817	2,076	206	611

※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⁴⁴⁾

또한, 부정수급 의심자를 대상으로 한 산림청의 2025년 합동
실태조사 점검에서도 선정대상 400건 중 116건(30.2%)이 등록
및 의무사항 등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부정의심자 대상 직불금 등록사항 및 등록자 의무사항 등 산림청 · 지방청 합동조사(400건 선정조사)】

(단위 : 건)

구분		2023	2024	2025	비고
등록건수		20,171	19,804	19,658	
점검건수		68	181	384	
점검 결과	양호	44	132	268	
	미흡	24(35.3%)	49(27.1%)	116(30.2%)	등록거부, 면적조정, 감액조치 등

※ 자료 : 산림청

□ 산림청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집행이 부진한 신고포상금은 제도개선을 통해 집행실적이 제고

4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시행규칙(제43조),
「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라 신고포상금 접수,
조사 및 처리 등을 담당하는 주무관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임.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별도의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나 계획이 없는 실정임.

- 한편, 산림청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이행점검 강화와 관련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적⁴⁵⁾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고가 부정수급 등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확대 시행, 이행점검 대상자 외 점검 대상자(부정수급 의심자)를 선정하여 합동 실태조사 실시, 향후 이행점검 항목에 대한 임업인 설문조사, 간담회 등 의견수렴 후 제도개선 및 운영방식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임.

- 따라서 산림청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이행점검 강화를 위한 현장점검과 간담회 등 의견수렴 및 임업인 대상 교육·홍보 등 예방활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안내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정수급 신고의 접근성과 인지도를 제고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음.

4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림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2025.8.)

2) 임업기능인양성 : 임업전문인력 교육훈련 추진 실적 제고 및 성과관리 체계 개선 필요

- 산림청은 임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규 교육과정 개발 및 대상자 발굴,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교육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교육 수요 변화와 임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을 강화하는 등 임업전문인력 교육훈련의 추진 실적을 제고하며, 성과지표가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임업기능인양성 사업은 임업의 생산성 및 산림작업의 질적 향상과 임업기계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임업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액 140억 2,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및 전용 등을 고려한 예산현액 165억 3,300만원 중 110억 7,100만원을 집행하고, 36억 6,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7억 9,3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음.⁴⁶⁾

【 2025년도 임업기능인양성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임업기능인양성	14,024	3,147	156 △794	16,533	11,071	3,668	1,793	12,024

46) 회계(기금)-세부사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임업기능인양성(1540-301)

(나) 검토의견

□ 산림조합중앙회는 정부(산림청) 요청에 따라 1984년과 1994년 임업교육(기술·기능)을 목적으로 임업훈련원을 국가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현재는 양산·강릉·진안 3개 교육원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임업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동 사업은 임업기능인 교육훈련(9억 1,200만원) 위탁사업 외에 내역사업인 ‘임업훈련원 운영’, ‘임업훈련원 시설보수’ 및 ‘임업기계지원센터 지원’을 통해 산림조합중앙회 3개 교육원의 운영비, 교육차량 지원, 시설보수 및 장비 구입 등 관련 예산을 매년 보조해오고 있으며, 2025년도는 22억 4,90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하였음.⁴⁷⁾

【2025년 산림조합중앙회 보조사업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기관명	지원 금액 (2025결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임업훈련원 운영 -임업훈련원 시설보수 -임업기계지원센터 지원	보조	산림조합중앙회	2,249	50~100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 자료 : 산림청

47) 임업기계지원센터 지원 예산의 경우, 3개 교육원 외에 평창군·산청군·청주시산림조합 및 중부목재사업본부를 포함함.

□ 산림조합중앙회(3개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임업전문인력 교육훈련’은 임업기능인 교육훈련 외에도 산주와 임업인을 대상으로 산림경영과 산림사업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통해 임업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인 임업전문교육과 기타 임업 관련 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음.

【2023년~2025년 ‘임업전문인력 교육훈련’ 이수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23,747	24,573	20,900
임업기능인	11,315	11,374	11,003
임업전문교육	5,234	5,831	3,821
수탁교육	2,931	2,627	2,449
임직원교육	135	-	-
기타교육	4,132	4,741	3,627

주1) 수탁교육 : 숲가꾸기패트rol 교육, 산림병해충 전문기술교육 등 공공기관 수탁교육

※ 산림청은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숲가꾸기패트rol 교육을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음.

주2) 기타교육 : 굴삭기 조종사 교육, 원목생산교육, 목공체험지도사 교육 등 교육원 자체 운영 교육

※ 자료 : 산림청

□ 산림청은 동 사업의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로 ‘임업기능인 교육훈련이수율’을 설정하여 사업성과를 관리하고 있으며,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으로 ‘임업전문인력 교육훈련’ 이수자 수를 사업효과로 제시하고 있음.⁴⁸⁾

48) 동 사업의 ‘임업기능인 교육훈련이수율’ 외에 성과지표로는 ‘임업기계장비 활성화율’이 있음.

‘임업기능인 교육훈련이수율’ 성과지표의 경우는 (’23년) 103.4%, (’24년) 103.7%, (’25년) 100.2% 등 최근 3년간 목표 대비 100% 이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2022~20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4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임업기능인 교육훈련 이수율(%)	목표	96.0	96.5	97.0	100	최근5개년 평균 달성률 고려 100%로 목표설정	당해연도 임업 기능인 교육훈 련 이수자 수/ 당해연도 임업 기능인 교육훈 련 목표 수 ×100	산림조합 훈련원(3개) 운영실적 보고서
	실적	100.3	99.8	100.6	100.2			
	달성도	104.4	103.4	103.7	100.2			

※ 자료 : 산림청

□ 그런데 성과지표 달성 여부와는 별개로, ‘임업전문인력 교육훈련’ 이수자에 대한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23년) 23,747명, (’24년) 24,573명에서 (’25년) 20,900명으로 최근 교육훈련 이수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해 산림청은 동 교육훈련 내 ‘임업전문교육’ 중 하나인 산림기술자 교육이 관련 법률에 따른 주기적(3년) 이수 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2024년 대비 2025년 전체 교육 인원이 감소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⁴⁹⁾

49)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18.11.29.)되면서 현업에 종사하는 산림기술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훈련 의무가 부여되었으며, 법 시행 이전부터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산림기술자는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21.11.28.) 산림기술자 교육을 이수하고, 매 3년마다

□ 그러나 ‘임업전문인력 교육훈련’의 연도별 세부 현황을 보면, 임업전문교육 외에도 임업기능인 교육훈련, 수탁교육 및 기타 교육 등 모든 교육 유형에서 이수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단순히 교육 주기성에 따른 일시적 변동으로만 보기에 한계가 있음.

특히, 2023년과 2025년의 산림기술자 교육 인원이 유사한 수준임에도 이를 포함한 임업전문교육 실적은 동기 대비 1,413명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교육 수요 발굴, 교육과정 운영, 참여 유인 등 사업 전반의 추진체계에 구조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 산림기술자 교육 인원 : ('23년)302명 → ('24년)2,576명 → ('25년)350명

더욱이 ‘임업전문인력 교육훈련’은 임업기능인 양성 외에도 산림경영과 산림사업 수행에 필요한 임업전문교육 등을 통해 산주와 임업인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임업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또한, ‘임업기능인 교육훈련’ 성과지표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음에도 실제 임업 분야 전반의 전문인력 양성 교육실적은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현재 성과지표가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함.

정기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산림청은 임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실질적인 성과 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규 교육과정 개발 및 대상자 발굴,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교육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교육 수요 변화와 임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을 강화하는 등 임업전문인력 교육훈련의 추진 실적을 제고하며, 성과지표가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가. 개 요

1) 세입결산

☐ 2025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예산액은 미편성 되었으나, 32억 1,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재산수입 5,100만원, 경상이전 수입 19억 2,200만원 등 19억 7,300만 원을 수납(순증)하였음.

☐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 12억 4,600만원은 관계기관 예산 부족임.

【 2025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과 목	예산액 (A)	징 수 결정액 (B)	수납액 (C)	불 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증 감	
						E=C-A	E/A
합 계	-	3,219	1,973	-	1,246	1,974	순증
○ 재 산 수 입	-	53	51	-	2	51	순증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	53	51	-	2	51	순증
○ 경상이전수입	-	3,166	1,922	-	1,244	1,922	순증
- 기타경상이전수입	-	3,166	1,922	-	1,244	1,922	순증

※ 자료: 산림청

2) 세출결산

☐ 2025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미편성 되었음.

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가. 개 요

1) 세입결산

□ 2025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액은 미편성 되었으나, 165억 5,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재산수입 9억 3,400만원, 경상이전수입 120억 100만원 등 129억 3,500만원을 수납(순증)하였음.

□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 36억 2,000만원은 관계기관 예산 부족임.

【 2025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과 목	예산액 (A)	징 수 결정액 (B)	수납액 (C)	불 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증 감	
						E=C-A	E/A
합 계	-	16,555	12,935	-	3,620	12,935	순증
○ 재 산 수 입	-	1,373	934	-	439	934	순증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	1,373	934	-	439	934	순증
○ 경상이전수입	-	15,182	12,001	-	3,181	12,001	순증
- 변상금및위약금	-	38	38	-	-	38	순증
- 기타경상이전수입	-	15,144	11,963	-	3,181	11,963	순증

※ 자료: 산림청

2) 세출결산

- 2025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액은 당초 3,973억 2,800만원이었으나 추경증액분 1,008억 2,500만원, 전년도 이월액 10억 7,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4,992억 2,900만원으로 증가함.
- 예산현액 중 임도시설, 목재 및 임산물활용 등 산림자원 및 산업육성과 탄소흡수원조성, 국립수목원 조성, 정원조성 및 관리 등 산림환경보전 및 증진에 4,568억 1,600만원(91.5%)이 지출되었음.
- 다음연도 이월액 303억 8,700만원은 임도시설 및 정원도시 조성에서 동절기 공사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120억 2,600만원은 지방비 미확보로 인한 사업 포기 2억 5,000만원과 각 비목별 집행잔액임.

【 2025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액 이용액				
[합 계]	397,328	100,825	1,076	-	-	499,229	456,816	30,387	12,026
□ 지역자율계정	177,097	-	-	-	-	177,097	177,080	-	-
○ 산림자원및산업육성 (1500프로그램)	113,899	-	-	-	-	113,899	113,899	-	-
- 임도시설	92,579	-	-	-	-	92,579	92,579	-	-
- 목재 및 임산물활용	21,320	-	-	-	-	21,320	21,320	-	-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액 이용액				
○ 산림환경보전및증진 (1900프로그램)	63,198	-	-	-	-	63,198	63,181	17	-
- 탄소흡수원조성	54,618	-	-	-	-	54,618	54,618	-	-
- 정원조성 및 관리	8,580	-	-	-	-	8,580	8,563	17	-
□ 지역지원계정	214,199	100,825	1,076	-	-	316,100	273,954	30,370	11,776
○ 산림자원 및 산업육성 (1500프로그램)	190,049	100,825	1,076	-	-	291,950	249,809	30,370	11,771
- 임도시설	190,049	100,825	1,076	-	-	291,950	249,809	30,370	11,771
○ 산림환경보전및증진 (1900프로그램)	24,150	-	-	-	-	24,150	24,145	-	5
- 국립수목원 조성	24,150	-	-	-	-	24,150	24,145	-	5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3,680	-	-	-	-	3,680	3,680	-	-
○ 산림자원 및 산업육성 (1500프로그램)	280	-	-	-	-	280	280	-	-
- 임도시설	280	-	-	-	-	280	280	-	-
○ 산림환경보전및증진 (1900프로그램)	3,400	-	-	-	-	3,400	3,400	-	-
- 탄소흡수원조성	3,400	-	-	-	-	3,400	3,400	-	-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2,352	-	-	-	-	2,352	2,102	-	250
○ 산림자원 및 산업육성 (1500프로그램)	1,302	-	-	-	-	1,302	1,052	-	250
- 임도시설	1,052	-	-	-	-	1,052	1,052	-	-
- 목재 및 임산물활용	250	-	-	-	-	250	-	-	250
○ 산림환경보전및증진 (1900프로그램)	1,050	-	-	-	-	1,050	1,050	-	-
- 탄소흡수원조성	750	-	-	-	-	750	750	-	-
- 정원조성 및 관리	300	-	-	-	-	300	300	-	-

※ 자료: 산림청

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가. 개 요

1) 세입결산

- ☐ 2025년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는 전입금 417억 2,000만원,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220억 9,900만원 등 719억 2,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실제 징수결정액은 전년도 이월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경상이전수입 등 10억 2,000만원이 증가한 729억 4,000만원이 되었음.
- ☐ 징수결정액 729억 4,000만원 중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등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219억 9,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17억 2,000만원 등으로 총 703억 9,500만원을 수납하였음.
- ☐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 25억 4,500만원은 체납자 재력 부족 및 거소불명으로 인한 것임.

【 2025년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과 목	예산액 (A)	징 수 결정액 (B)	수납액 (C)	불 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증 감	
						E=C-A	E/A
합 계	71,920	72,940	70,395	-	2,545	△1,525	△2.1
<손익계정>	38,258	39,950	37,405	-	2,545	△853	△2.2
○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22,099	22,578	21,998	-	580	△101	△0.5
- 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	22,099	22,578	21,998	-	580	△101	△0.5
○ 재산수입	20	31	31	-	-	11	55.0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0	31	31	-	-	11	55.0
○ 경상이전수입	59	1,974	9	-	1,965	△50	△84.7
- 변상금 및 위약금	1	1,917	-	-	1,917	△1	-
- 기타경상이전수입	58	57	9	-	48	△49	△84.5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1	3	3	-	-	2	200.0
- 잡수입	1	3	3	-	-	2	200.0
○ 세계잉여금	3,058	2,343	2,343	-	-	△715	△23.4
- 세계잉여금이입액	3,058	2,343	2,343	-	-	△715	△23.4
○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13,021	13,021	13,021	-	-	-	-
- 전입금	13,021	13,021	13,021	-	-	-	-
<자본계정>	33,662	32,990	32,990	-	-	△672	△2.0
○ 경상이전수입	-	15	15	-	-	15	순증
- 기타경상이전수입	-	15	15	-	-	15	순증
○ 관유물매각대	20	5	5	-	-	△15	△75.0
- 고정자산매각대	20	5	5	-	-	△15	△75.0
○ 전년도이월금	-	4,271	4,271	-	-	4,271	순증
- 전년도이월금	-	4,271	4,271	-	-	4,271	순증
○ 세계잉여금	4,943	-	-	-	-	△4,943	△100.0
- 세계잉여금이입액	4,943	-	-	-	-	△4,943	△100.0
○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28,699	28,699	28,699	-	-	-	-
- 전입금	28,699	28,699	28,699	-	-	-	-

※ 자료: 산림청

2) 세출결산

- 2025년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예산액은 당초 719억 2,0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64억 6,1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783억 8,100만원으로 증가함.
- 예산현액 중 휴양림 시설조성에 316억 9,600만원, 휴양림 운영에 372억 5,800만원 등 88%인 689억 5,400만원이 지출되었음.
- 다음연도 이월액 65억 7,600만원은 자연휴양림조성 사업 등에서 동절기 공사 중지 및 절대 공기 부족으로 54억 8,600만원, 관계기관 협의 지연으로 9억 6,600만원, 책특회계 세수 부족으로 인한 운영비 미지급금 1억 2,400만원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28억 5,100만원은 비목별 집행잔액 등임.

【 2025년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초과 지출	예비비 사용액	전용액 이용액				
[합 계]	71,920	6,461	-	-	-	78,381	68,954	6,576	2,851
□ 손익계정	38,258	-	-	-	-	38,258	37,258	124	877
○ 산림이용및복지증진 (1700프로그램)	36,753	-	-	-	-	36,753	35,753	124	876
-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소 인건비	12,828	-	-	-	-	12,828	12,429	-	399
- 기본경비	1,065	-	-	-	-	1,065	995	-	70
- 국립자연휴양림 조성관리	22,384	-	-	-	-	22,384	21,866	124	394
- 건강보험부담금	476	-	-	-	-	476	463	-	13
○ 회계기금간거래 (8400프로그램)	1,505	-	-	-	-	1,505	1,505	-	-
- 공무원연금부담금	1,505	-	-	-	-	1,505	1,505	-	-
□ 자본계정	33,662	6,461	-	-	-	40,123	31,696	6,452	1,975
○ 산림이용및복지증진 (1700프로그램)	33,662	6,461	-	-	-	40,123	31,696	6,452	1,975
- 기본경비	24	-	-	-	-	24	24	-	-
- 국립자연휴양림 조성관리	33,638	6,461	-	-	-	40,099	31,672	6,452	1,975

※ 자료: 산림청